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연구

박 동 규 부연구위원
유 남 식 책임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13/199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담당자	담 당 분 야
박 동 규	제1장, 제2장, 제4장, 제6장 집필
유 남 식	제3장, 제5장 집필

머 리 말

1989년 10월 가트 국제수지위원회(GATT/BOP) 이사회 결정에 의해 우리 나라는 국제수지의 적자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이 어렵게 되면서 농림수산물도 연차적인 수입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잔존 수입제한 품목은 수입개방계획을 예시하고 일정에 따라서 개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여러 나라로부터 농림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다. 농촌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라는 대내적인 여건변화 때문에 특정 수입농산물이 국내 수급조절을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산과 외양이 비슷하고 가격차이가 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농산물에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나 생산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의 정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농산물수입이 늘어날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가 입는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원산지표시제의 정착방안 모색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원산지표시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농산물 자체의 특성과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영세성으로 인한 단속의 한계성이 표출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산물의 원산지미표시 원인

등을 규명함으로써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가 연구자나 정책담당자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연구 수행의 과정에서 각종 자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국립농산물검사소 관계자에 감사드린다.

199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 2
3. 연구방법 ····· 4

제 2 장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

1. 농산물 수입동향 ····· 6
2. 수입농산물 유통현황 ····· 8
3.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 사례 ····· 12
4.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 ····· 16

제 3 장 원산지 규정과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원산지규정에 관한 WTO협정 ····· 21
2. 우리 나라의 원산지표시제 ····· 32
3. 우리 나라의 원산지표시제 운용현황 및 문제점 ····· 54

제 4 장 소비자의 인식도 및 활용도

1. 소비자조사 개요 ····· 79
2. 원산지표시제 인식도 ····· 80
3. 원산지표시제 활용도 ····· 83
4. 원산지표시제 평가 ····· 84
5. 새로운 정보와 소비자 반응 ····· 87

제 5 장 외국의 원산지표시제

1. 일본 ····· 89
2. 미국 ····· 91
3. EC ····· 92

제 6 장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1. 농산물 규격출하 확대 ····· 97
2.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상표화 ····· 98
3. 원산지표시 방식의 개선 ····· 99
4. 단속의 효율화 ····· 99
5. 소비자단체와의 협조강화 ····· 101
6. 단속관련규정의 개정·정비 ····· 102

표 목 차

제 2 장

표 2- 1 주요 농산물 수입실적, 1992~94 ····· 6
표 2- 2 수입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이 ····· 9
표 2- 3 수입 농림수산물의 부정유통 사례 ····· 13
표 2- 4 소비자의 농림수산물 구입시 국내외산별 구입비율····· 14
표 2- 5 원산지표시제 도입의 비용-혜택, 1994 ····· 20

제 3 장

표 3- 1 포장유통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활자크기 ····· 44
표 3- 2 낱개(산물)유통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 44
표 3- 3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 52
표 3- 4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고발포상금 지급기준····· 54
표 3- 5 농검지소별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현황(95. 8 현재) ···· 55
표 3- 6 농검지소별 원산지표시 단속실적(1995년도 실적기준) ·· 59
표 3- 7 월별 원산지표시 단속실적(1995년도 실적기준) ····· 60
표 3- 8 농검지소별 기술계 공무원 1인당 단속실적····· 61
표 3- 9 농검지소별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1995. 1~10) ·· 62
표 3-10 월별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 ····· 62
표 3-11 연도별 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64
표 3-12 산지별 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65
표 3-13 유통업소 형태별 검사장소(업소)수 ····· 66

표 3-14 품목류별 적발(위반)건수 ····· 66
표 3-15 업소형태(업종)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수 ····· 68
표 3-16 품목별 원산지표시율 조사결과(소비자단체) ····· 69
표 3-17 원산지표시제의 집단별 문제점 ····· 72

제 4 장
표 4- 1 조사대상자의 기본 통계치 ····· 80
표 4- 2 원산지표시제 인지경로 ····· 81
표 4- 3 원산지표시제 숙지정도 ····· 81
표 4- 4 소비자단체의 농산물관련 교육현황, 1994~95 ····· 82
표 4- 5 소비자의 원산지표시 사항 만족도 ····· 84
표 4- 6 소비자의 농산물 주요 구입처 ····· 85
표 4- 7 구입처별 원산지표시 이행정도의 소비자견해 ····· 85
표 4- 8 원산지표시 정보의 신뢰성 ····· 86
표 4- 9 원산지표시 사항 불신품목 ····· 86

그 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 1 수입 농산물 유통경로 ····· 10
그림 2- 2 수입 농수산물 유통관련 부처 및 법 ····· 11

제 3 장
그림 3- 1 원산지규정의 종류 및 구조 ····· 24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농산물 수입량이 늘어나고 수입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국내외 가격 차이로 인해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가 저렴한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소비한다면 소비자는 부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만큼의 피해를 입게 되며, 해당 농산물의 수입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국내산 농산물 수요가 그만큼 감소함으로써 생산자도 손해를 보게 됨.

○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189개품목의 수입 농림수산물과 국내산 농림수산물 227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음.

- 원산지표기가 어려운 산동물, 활어 등은 제외대상임.

- 1996년부터는 식용유지, 과자류 등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검사소나 시도에서는 수시로 현지실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여러 형태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 농림수산물의 부정유통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는 실정임.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개방 폭이 확대되어 국내 농림수산물과 외양상 유사한 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현재와 같이 국내 유통과정에서 둔갑판매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됨.

○ 소비자나 도·소매업자가 원산지표시제를 어떻게 인식·이행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운용상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행되고 있는 수입 농림수산물에 대한 국내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 및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외국의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우리 나라의 경우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의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원산지표시제 자체가 갖는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수입 농림수산물의 혼합 및 둔갑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 및 생산자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모색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저렴한 수입마늘이나 양파가 국내산과 Pool화되어 국내산 깐 마늘이나 깐 양파로 부정유통될 경우 원산지표시제 자체만으로 단속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가격에 있어서 국내산보다는 저렴하지만 외양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

하면서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면서 국내 생산자도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됨.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의 정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연구의 주된 과제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네부문으로 구성됨.

○ 첫째는 원산지표시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이를 위해 수입농산물의 유통현황, 부정유통의 가능성과 사례를 소개하며 원산지표시제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보다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제시함. 이러한 내용을 제2장에서 검토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함.

- 농산물 수입동향
- 수입농산물 유통현황
-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 사례 및 가능성
-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

○ 둘째는 원산지규정과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제시함. 원산지표시제에 관한 WTO협정문과 우리 나라의 규정을 소개하여 우리 나라가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범위에서 원산지규정을 운용하고 있음을 제시함. 또한 운용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함.

- 원산지규정에 관한 WTO협정문 내용
- 우리 나라 원산지표시제의 추진경위 및 실시요령
- 원산지표시제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

○ 셋째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소비자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소비생활에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함.

- 소비자의 원산지표시제 인식도
- 원산지표시제 활용도
- 소비자의 농산물 구입장소 및 평가

- 새로운 정보에 의한 소비자 반응

○ 넷째는 외국의 원산지규정을 소개하여 우리 나라가 원산지표시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을 도출하도록 함.

- 일본, 미국, 유럽 등

○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원산지표시제 이행상의 문제, 소비자의 의견,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3. 연구방법

○ 농산물의 유통을 규제하는 원산지표시제의 도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거논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 농림수산물의 부정유통사례와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혜택분석을 시도함.

- 수입 농림수산물이 국내산으로 위장유통된다는 것이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활자화된 사례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통상인이나 산지의 중개상 등의 의견을 청취함.
- 수입 농림수산물의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품목별 가격차, 시중유통량 등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전체적인 비용-혜택분석이 곤란하기 때문에 콩과 고사리의 사례로 개략적인 분석을 시도함.

○ 우리 나라의 원산지규정과 원산지규정에 관한 국제규범인 WTO협정문, 우리 나라의 원산지규정 이행 실태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

- 우리 나라의 원산지규정이 국제규범인 WTO협정문에 위배되지 않는지의 검토
- 외국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조사
- 원산지표시율, 원산지표시 단속내용 등 분석

○ 우리 나라의 원산지규정이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지, 소비자측면에서의 원산지규정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 대

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표분석

- 백화점, 아파트 밀집지역, 재래시장 인근지역, 소득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발
- 주요 설문내용은 농산물구입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지,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 등

○ 원산지규정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을 위해 원산지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제 2 장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

1. 농산물 수입동향

○ 수입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수입물량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국내산 공급량으로 소비가 충분하였던 토란줄기, 고구마줄기, 도토리분도 농업노동력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내생산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수입품목으로 등장함.

표 2-1 주요 농산물 수입실적, 1992~94

	품 목 명	수 입 실 적(톤)		
		1992년	1993년	1994년
곡 류	수수	186,800	47,700	22,100
두 류	녹두(종자용이외)	4,600	4,700	7,100
	팥	2,300	16,800	21,800

〈표 2-1 계속〉

	품 목 명	수 입 실 적(톤)		
		1992년	1993년	1994년
채유종실류	땅콩(미탈각)	17,600	12,200	13,300
	참깨	37,100	52,800	72,300
	들깨	-	-	12,200
채소류	파(건조)	-	992	1,866
	마늘(신선, 냉장)	-	924	38,468
	토란줄기(건조)	-	-	733
	고구마줄기(건조)	-	426	823
버섯류	양송이(건조)	13	3	129
	송이버섯	10	2	25
	영지버섯(건조)	273	391	436
한약재류	감초	2,619	4,240	1,922
	두충	12	87	63
산채류	고사리(건조)	3,369	3,451	3,541
	죽순	981	1,043	1,648
과실류	호도(탈각)	45	58	237
	은행	652	522	182
	감(건조)	3	481	1,284
기타임산물	도토리분	-	449	1,882

자료: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수입상황」, 국립농산물검사소, 1995에서 발췌.

- 농산물의 수입자유화 영향으로 수입업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호박고지, 무말랭이 등 저렴한 농산물도입이 확대됨. 1993~94년 동안 고사리 수입실적이 있는 것으로 무역협회에 등록된 업체수는 약 80개 정도임.

○ 일부 품목은 수급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절제하게 수입한 결과 수입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적정이윤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음.

○ 수입농산물은 크게 국내수급이 불안한 경우에 비축용으로 수입되었다가 방출되는 참깨, 땅콩, 팥, 녹두 등의 품목과 국내 공급부족과 국내외 가격차이로 인해 전문 수입업자에 의해 수입품목이 발굴된 고사리, 무말랭이, 수수, 조 등으로 대별됨.

- 이러한 품목의 특성은 공통적으로 국내외산간 식별이 곤란하고 국내산 가격이 수입산보다 고가인 것이 일반적이며 참깨의 국내외 가격차이는 심지어 13배 정도여서 밀수도 성행하고 있음.

○ 향후 일부품목의 경우 국내산 생산의 감소, 국내외산 가격차이로 인한 수입농산물 수요증가 가능성의 이유 등으로 인해 농산물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2. 수입농산물 유통현황

○ 수급비축용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 및 방출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농가의 피해는 발생하지만 물가안정에 기여함.

표 2-2 수입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이

품 목	수 입 량 중 중국산비중(%)	가 격 차 이 (국산/중국산)	비 고
참 깨	100.0	13.0배	밀수량이 많음
건 고 추	99.4	1.8	
땅 콩	100.0	3.1	
팥	31.9	1.7	태국이 주요 수입국
녹 두	59.4	4.1	
고 사 리	100.0	3.3	조정관세 100%
무말랭이	100.0	2.1	조정관세 60%
인 삼	100.0	3.3	불법유통
들 깨	99.4	3.3	1993년 수입자유화
수 수	99.5	8.2	1991년 수입자유화
조	98.4	3.0	1991년 수입자유화
표고버섯	100.0	4.3	수출입량이 비슷
버 섯	100.0	-	일본으로 수출
양 송 이	96.8	-	호주로 수출

자료: 「중국산 농산물수입 및 유통실태」에서 재구성,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4.

○ 국내외 가격차이로 인해 전문 수입업자에 의해 수입되는 농산물은 건조채소류, 한약재류, 임산물류로 매우 다양하며 최종소비자와 식품업체가 소비하고 있음.

-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국내 생산농가에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들깨, 조, 수수 등 국내공급이 부족한 품목과 도토리, 은행 등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채취인력 부족으로 국내공급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에게 필요물량을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수입농산물중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해 수입·유통되는 품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매를 통해 도·

그림 2-1 수입 농산물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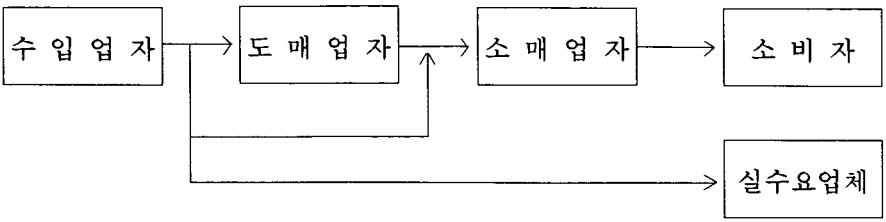

소매상을 통하여 소비자나 실수요업체에게 전달되며, 전문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도매업자, 소매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식품업체에 직접 판매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고구마전분의 경우 농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한 것을 면류협동조합에 70%, 전분조합에 30% 배당해 주며 각 업체에서는 국내산 사용실적에 따라서 수입산을 배정받음.
- 전분과 같이 유통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수입당사자가 도·소매상에게 직접 유통시키고 있음.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에 의해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상태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업자의 요구에 의해 소포장단위로 수입되어 그대로 유통되거나 벌크로 수입될 경우 소분업자가 재포장후 원산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고 있음.

- 소포장된 농산물이 도·소매단계에서 해포되어 산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음.

○ 농산물 수입 및 유통에 관련하는 부처로는 수입통관단계에서 통상산업부, 관세청이 있으며 국내유통단계의 농림수산부,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검사소, 검찰청, 경찰청 등이 있음(그림 2-2 참조).

- 통상산업부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지정, 표시요건 등 제도운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불공정수출입행위를 조사

하여 제재를 가함.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확인, 원산지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에 관한 적정성 검사, 불공정 수출입행위를 확인하여 무역위원회에 통보함.

- 농림수산부는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국내유통단계의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을 제정·운용하고, 국립농산물검사소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유통중인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검사를 함.
- 검찰청과 경찰청은 원산지표시규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담당함.

그림 2-2 수입 농수산물 유통 관련 부처 및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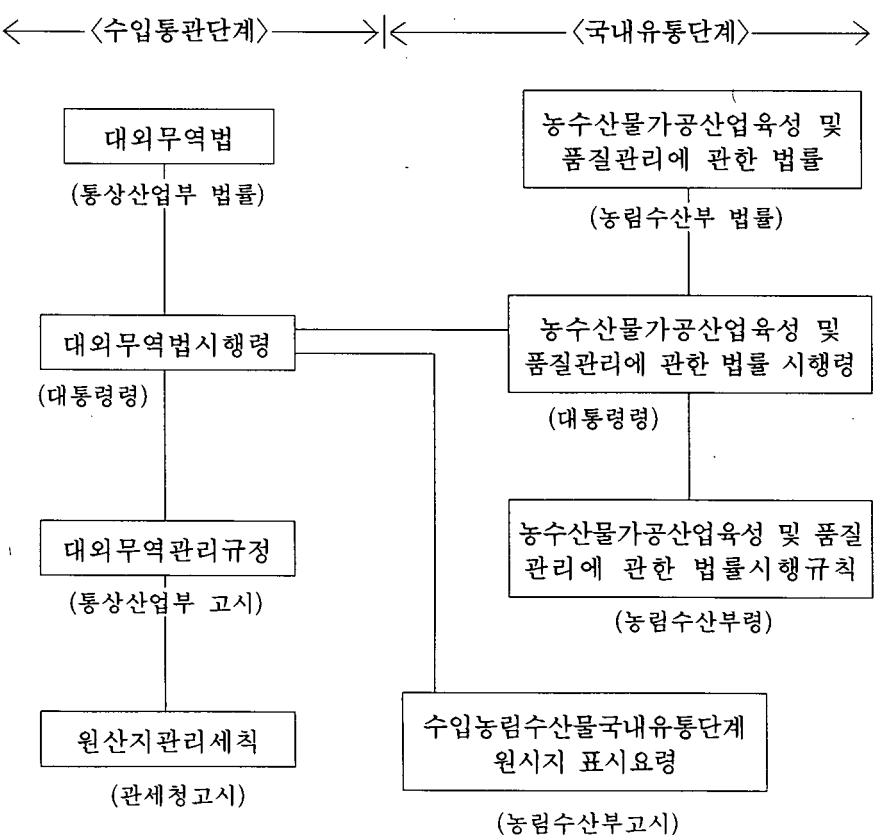

3.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 사례

○ 정부는 수입산과 국내산간의 외양상의 차이가 있음을 홍보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실제 생활에 응용하기는 매우 곤란함.

- 도라지의 경우 국내산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비교적 거칠며, 색깔이 진하고 한 덩어리에 작은 알이 여러개 붙어 있고 모양이 둥근 반면에,
- 수입산은 표면이 편편하고 비교적 매끈하며, 색깔이 엷으며 한 덩어리에 알이 적게 붙어 있고 모양이 넓적하다고 하나,
- 국내외산이 동시에 진열되지 않고 수입산만 제시될 경우 원산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농산물의 국내외산 구별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일부 상인들이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최양부외(한·중 농림수산분야 협력방안, 1992)는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음. "소량다품목 농산물은 국내산과 식별이 곤란하고 높은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세차익이 커서 민간 수입업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수입을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품목은 국내산으로의 둔갑 또는 혼합으로 국내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수입급증에 따른 농가피해, 국민건강 위해소지, 국내수요의 한정으로 인한 소량수입만으로도 가격하락 등을 초래....."

○ 중국산 수수, 조 등 잡곡류는 조곡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산 잡곡류의 주산지인 제천, 단양, 청주 등의 도정공장에서 정곡으로 도정되고 있음. 산지 수집상인들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국내산과 혼합되어 국내산으로 위장 유통되고 있다고 증언함.

- 마늘의 경우에도 수입산이 국내산 주산지로 역류되어 깐마늘로 변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소비지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며, 농수

산물유통공사에서 방출된 마늘이 일부 상인에 의해 수집되어 깐마늘이 되어 국내산으로 둔갑유통되는 경우도 있음.

○ 일부 관광지에서 국산 고사리나 도라지 등 지역특산품이라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입산을 구입하여 위장 판매하는 사례도 있음.

- 판매형태도 점포를 가지고 있는 고정상인이 아닌 이동상인에 의한 것으로 위장판매인의 실체조차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하여 유통시키고 있는 소포장 참깨를 양곡상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양곡상에서 소포장 참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고 산물로 소량씩 구입하고 있으며 산물로 구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원산지가 알라스카인 게가 영덕대게로, 중국산 땅콩·더덕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

표 2-3 수입 농림수산물의 부정유통 사례

품 목	원 산 지	원산지위장	기 타
게	미국(알라스카)	영덕대게	농림수산물의 경우 전문가가아닌 일
참 깨	중 국	국내산	반 소비자들은 육안식별이 어려움
땅 콩	〃	〃	
더 덕	〃	〃	
고 사 리	〃	〃	
표고버섯	〃	〃	
인 삼 등	〃	〃	

자료: 농업통상소식, 농림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실, 1993. 7.

○ 서울시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소지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매행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당 농산물 소비자중 수입농산물을 구입하였다고 대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국내생산량이 적은 것을 감안하면 소비생활에서 소비자는 기만당하고 있다

고 추론할 수 있음.

- 품목별 최종소비자에 의한 국내외산별 소비량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가 부정유통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 소비자가 농산물 구입시 주로 국내산을 구입한다고 주장하고 국내산 생산량이 수입산보다 적을 경우에는 부정유통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2-4 소비자의 농림수산물 구입시 국내외산별 구입 비율

류 별	품 목	구입인수	국내산 구입인수 비중	수입산 구입인수 비중
곡 류	조	112명	80.4%	19.6%
	수 수	103	90.3	9.7
두 류	콩	253	92.5	7.5
	팥	128	87.5	12.5
채 유 종실류	땅 콩	182	80.2	19.8
	참 깨	237	66.7	33.3
	들 깨	70	82.9	17.1
채소류	마 늘	387	86.3	13.7
	양 파	398	84.4	15.6
산채류	고사리	208	58.7	41.3
	취나물	252	90.9	9.1
버섯류	송이버섯	197	91.9	8.1
	표고버섯	257	93.8	6.2
과실류	잣	112	68.8	31.3
	대 추	196	88.8	11.2
육 류	쇠고기	407	47.4	52.6

- 주로 식용으로 소비되는 조의 경우, 1994년도 국내 생산량은 2,150톤인데 비해 수입량은 5,042톤으로 소비량 중 국내산 비율은 29.9%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수입산을 구입하는 확률은 70% 수준이 될 것이나,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것이 국내산이라고 믿는 경우가 80.4%로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시중 유통되는 고사리의 87.5%는 수입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41.3%만이 수입산을 구입하였다고 믿고 있음.
  · 국내산은 일부 회원조합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약 500톤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 고사리는 다른 건조채소류와는 달리 식품업체 등에 납품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1994년도의 건고사리 수입실적은 3,541톤으로 전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
- 땅콩의 경우에도 1994년도 생산량은 16,800톤이며 수입량은 13,300톤으로 전량이 소비자에 의해 직접 소비된다고 가정하면 (일부는 제과점 등에서 가공용으로 소비되나 사용량 자료가 발표되지 않고 있음) 소비자들이 국내산 땅콩을 구매할 가능성은 55.8%이나 실제로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구입하였다는 비율은 80.2%로 높게 나타남.
  · 제과점 등 가공업체에서는 국내산보다는 저렴한 수입산 원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판매될 가능성은 훨씬 높음.

○ 유통량 중 국내산 비중과 소비자들의 구입경험과 차이가 나는 것은 상인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였더라도 위장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기만을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임.

○ 소비자들이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산물유통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이 제기됨.
- 한 수단으로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4.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

4. 1. 왜곡된 수요의 정상화

○ 보통 수입농산물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외관상 국내산과 육안구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수입농산물이 어느 정도 가공되면 국내산과의 차별화가 더욱 어렵게 됨. 따라서 도소매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올바른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기 곤란함. 즉, 저렴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산이라고 표기하여 판매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임.

○ 국내산이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산을 판별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곤란한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이라고 판매될 때 수입농산물의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국내산 해당 농산물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 들게 됨. 또한 전문가들도 국내외산 판별이 곤란하다고 인식되는 품목의 경우 소비자들은 차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시키려 할 것임. 즉, 국내산을 소비하기를 원하지만 국내산을 구입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요를 국내산에서 저렴한 수입산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것임.

- 소비자들이 농산물구입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 76.8%, 농산물 구매 결정시 참고로 하기 위해서가 22.7%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제4장 참조).
- 원산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는 그래도 구입한다가 58.1%이지만 42.3%의 소비자는 국내산 농산물을 선호하지만 부정유통으로 인해 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렴한 수입산을 구입한다고 응답하여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신뢰감이 낮을 경우 수요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소비자의 상품구매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발생함.

○ 원산지표시제 정착으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게 되어 국내산으로 믿고 소비하였던 상품이 수입산으로 인식된다면 수입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국내산 소비는 늘어나고 소비자의 만족도도 커질 것이며 농가소득 증대도 예상됨. 또한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국내산 소비를 포기하였던 소비자의 농산물 수요도 국내산으로 이동할 것임.

- 깐마늘이 부정유통의 소지가 많은 품목임을 알린 후 향후 구매의사를 확인한 결과 깐마늘 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제4장 참조).

4.2. 원산지표시제 도입의 효과

○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소비자수혜의 규모는 소비자들이 새롭게 제공되는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려는 그리고 구매행위를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얼마나 있는가에 좌우됨.

-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됨으로써 반드시 소비자는 원산지표시를 확인한 후 상품을 구입하고 미표시의 경우 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상인들은 필연적으로 규정을 이행하게 되고 그만큼 소비자는 구매시 상품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게 됨.
- 부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실은 감소하게 될 것임.

○ 소비자들이 도입된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제도 존재만으로도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시켜 줌으로써 제도의 존재가치(existing value)는 충분할 것임.

- 상품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소비왜곡을 방지함.

○ 원산지표시제가 존재함으로써 유통업자에게는 누군가 자신의 판매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는(surveillance signal) 제약을 가함으로써

유통정상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음.

- 상품에 정확한 상품정보가 제공된다 하여도 소비자가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여 상품구입시 선택의 기초로 삼는 가능성은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농산물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배의 왜곡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임.

-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농산물수입으로 인한 혜택은 소비자가 아니라 일부 부정유통업자에게 귀속되고 부정유통으로 인해 소비가 왜곡됨으로써 국내 생산자의 손실이 초래되는 등 분배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됨.

4.3.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따른 경제성분석

○ 특정사업이나 제도가 아무리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운용상의 비용이 혜택을 상회하는 경우 신규제도 도입의 타당성은 크게 줄어들게 됨.

○ 이러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비용-편익분석 기법이 도입되고 있음. 비용-편익분석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규제가 주어졌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모든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고 이들을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석도구의 하나임.

- 비용-편익분석은 특정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모든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임.
- 효율성에 관한 해답을 얻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음.
- 경제분석을 위해 실제효과(real effect)만을 대상으로 함.

○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따른 수혜자는 소비자와 생산자임.

- 국내외산 농산물을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소비자는 국내산가격을 지불하고 수입산을 구입하였던 상황에서 원산지표시제 도입으로 제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과거의 손실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됨.
  · 과거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인식하고 구입하였던 소비자가 제도 도입후 국내산을 구입한다면 동일한 가격으로 선호하는 상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국내외산 가격차이 만큼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 수입산을 선호하는 경우에도 국내외산 가격차이 만큼의 실제적 혜택을 누리게 됨.
- 원산지표시제 도입으로 원산지미표시 등으로 인한 부정유통소지가 제거된다면 국내산 농산물의 시중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이익이 예상됨.

○ 원산지표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부담자는 원산지를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상인들임.
- 상인들은 원산지표시 규정에 의해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산물로 판매할 경우 팻말을 사용함.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스티커비용과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소요되며 팻말을 사용할 경우 팻말비용이 소요됨.

○ 그러나 농산물의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품목에 따라 국내산과의 가격차이, 용도(가공용, 최종소비) 등에 따라 수혜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따른 총괄적인 혜택을 산정하기 곤란함.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고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종합적인 소요비용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품목별 시산만이 가능함. 본연구에서는 콩과 고사리를 예로 들어 비용과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였음.

○ 1994년도 식용콩과 고사리의 수입량인 309천톤과 3,541톤이 당년도에 전량 소비된다고 가정할 때 해당물량에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이를 적용한 1,977억원과 826억원이 소비자혜택이라 할 수 있으며, 포장거래에 따른 비용은 약 23억원과 5억원으로서 생산자 혜택을 고려할 경우 혜택이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식용콩과 고사리의 개략적인 비용과 혜택을 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가정이 필요함.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수입콩과 수입고사리를 국내산으로 인식하고 소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인해 저렴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국내외산 가격차이 만큼을 절약하게 되며 국내산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과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상품을 구입함으로써 국내외산 가격만큼의 혜택을 누리게 됨.
- 농산물은 전국의 농산물판매소 157,183개소(허가업소)에서 판매되며 판매상은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해 저렴한 팻말을 사용하거나 소포장판매의 경우 스티커를 사용함. 팻말비용은 개당 500원이나 3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함. 소포장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국내산 생산량도 포함하였음(콩 154천톤, 고사리 500톤). 소포장의 경우 스티커가 개당 20원이며 스티커를 부착하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숙련된 사람이 분당 80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일급최저임금인 8,68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5 원산지표시제 도입의 비용-혜택, 1994

품 목	비 용		소비자혜택
식 용 콩	산물거래시	52백만원	1,977억원
	포장거래시	2,341	
고 사 리	산물거래시	52	826
	포장거래시	272	

제 3 장

원산지규정과 운용현황 및 문제점

1. 원산지규정에 관한 WTO협정

1.1. 원산지규정의 개요

1.1.1. 원산지규정의 의의

○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국제무역상 거래되는 특정 제품의 생산국 또는 제조국 즉, 원산지(the Country of Origin)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한 제반 법률, 규정, 판례 및 이와 관련되는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교역물품에 대한 일종의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음.

○ 원산지표시(Country of Origin Marking) 제도의 목적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당해 물품의 생산국 또는 제조국을 표시하거나 부착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최종소비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어 물품구매시 공정한 선택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음.

1.1.2.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구조

○ 원산지규정은 일반적으로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에 대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에 관한 규정과 통관과정에서의 상기 요건의 충족여부를 밝히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기타 부대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술적 요건에는 예를 들어 특정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었을 경우 원산지를 어느 국가에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것 등이 있음.

○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판정 기준으로서는 ①세번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Criteria), ②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Criteria), ③주요공정 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 등이 있음.

- '세번변경 기준'은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서로 다를 경우 세번의 변경에 해당하는 공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임.
- '부가가치 기준'은 특정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공정이 일어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임.
- '주요공정 기준'은 생산과정상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공정을 파악한 후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임.

○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과정에서 해당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각종 원산지 관련증명서의 제출 의무화, 수입국의 통관부처에 의한 관련서류 조회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을 가능케 함으로써 원산지규정의 실효성을 기하고 있음.

-또한,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 직

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제3국 경유 또는 보세지역 통과과정에서의 가공공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1.1.3. 원산지규정의 종류

○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크게 분류됨.

- '특혜 원산지규정'은 다자간 또는 협상에 의한 특혜무역 협정(EFTA, LAFTA, NAFTA, AFTA, 미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미국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풀기 위해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으로서 특혜를 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수혜대상국에서 생산된 물품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규정임.
- 지역간 무역에 있어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하여 비수혜국이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군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를 운용할 때 적용하는 규정도 이에 해당됨.
- 이에 반하여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무역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됨.

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 운용

-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함으로써 원산지의 허위표시 또는 오해의 우려가 있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우회 수입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

② 반덤핑 상계 관세제도 운용

③ 수량제한 및 할당 관세제도 운용

- Quota,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다자간 섬유류협정, 긴급

수입제한

④ 수입지역 제한제도 운용

- 국민보건위생 보호, 수입선 다변화 제도,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그림 3-1 원산지규정의 종류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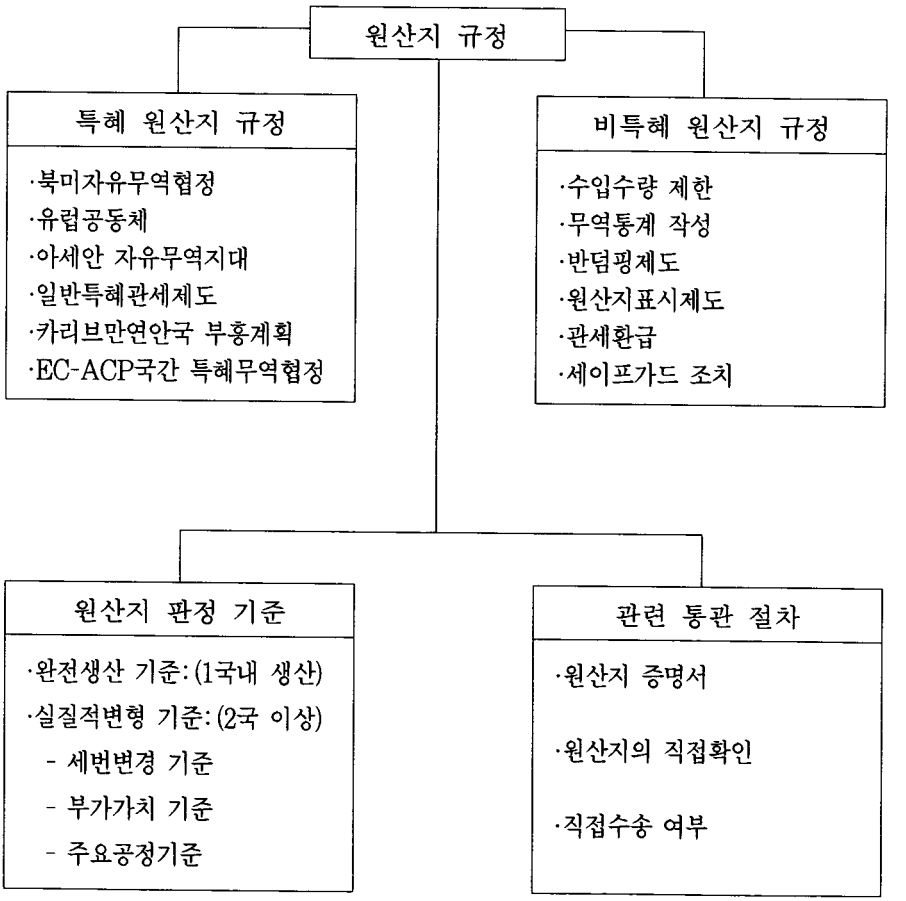

1.2. 협정의 배경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및 지역주의(regionalism)의 동시진행으로 말미암아 각국의 무역정책상의 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음.

- 지역경제 통합확대로 역외국의 우회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판별수요가 증대되고, 각국의 원산지규정 상이성·불명료성·복잡성 및 차별적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무역장벽적 효과가 발생되고 있음.
- 특히, EC의 자의적인 원산지규정 적용에 대해 명료하고 통일성있는 조화로운 원산지규정의 제정 필요성 제기가 직접적인 배경이라 하겠음.

○ GATT 협정 및 기존의 국제협약(교또협약)상에서도 원산지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협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GATT 협정문의 제9조에서는 원산지표시 문제와 관련하여 원산지표시가 국제무역에 있어 비용증가 효과 등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토록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원산지규정은 결여되어 있음.
- 원산지규정에 관한 국제협약으로는 교또협약이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으나 이 역시 특별한 원칙을 채택했다기 보다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원칙을 나열한데 불과하며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음.
- 교또협약은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D1), 원산지 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D2), 원산지 증명서관리에 관한 부속서(D3)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산지규정상의 주요기준으로는 ① 완전생산기준과 ② 2개국 이상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가져오는 공정이 발생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교또협약의 부속서 내용에 대해 수락한 국가는 20여개국에 지나

지 않고 미국도 가입하지 않아 국제협약으로서의 규범성이 약했던 관계로 WTO에서 보다 명료하고 통일된 원산지규정 이른바 '조화된 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의 제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이 현재 진행중에 있음.

1.3. 협정의 주요내용

1.3.1. 협정문 구성

○ 원산지규정에 관한 WTO협정문은 4부 9조 및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 1부: 정의 및 적용범위
- 2부: 원산지규정 적용규칙
- 3부: 통고, 심사,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규정
- 4부: 조화된 원산지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부속서 Ⅰ: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설치운영
- 부속서 Ⅱ: 특혜 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1.3.2. 주요내용

○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WTO협정에서의 주요쟁점은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 원산지 판정기준, 통일 원산지규정의 제정 등 3개 분야임.

가.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

○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는 주요 협상참가국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중의 하나로서 특혜무역의 포함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이는 EC 및 카나다 등의 제안에 따라 제외되었음.

○ 원산지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최혜국대우(MFN) 원칙(GATT 1, 2, 3, 11, 13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6조), 세이프가드(19

조), 원산지 표시요건(9조),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량규제나 관세쿼타 등의 적용과 같이 비특혜적인 통상정책 수단의 적용 그리고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의 작성 등임.

-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등 지역간 협정에 의한 특혜무역과 일반특혜관세제도 등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관세제도는 적용대상이 아님.
- 향후 작성될 통일 원산지규정과 잠정기간 동안 각국이 준수해야 할 원산지규정 관련규칙은 비특혜부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부속서의 공동성명에서는 특혜무역의 원산지규정과 적용에 있어서도 본 협정상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음.

나. 원산지규정 적용상의 주요원칙

○ 모든 체약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령은 명료해야 하고 자의적인 원산지규정 기준은 배제되어야 함.

-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세번변경으로 인정되는 세번의 단위 명시
-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부가가치비율 산정방법 명시
- 주요공정기준 적용시 상품의 원산지를 부여하는 공정이 명시되어야 함.

○ 원산지규정이 통상정책상의 조치나 수단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 그 자체가 교역목적 달성을 위한 직·간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원산지규정의 부당한 적용으로 세계교역을 제한, 왜곡 및 교란시키는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됨.

- 수출입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부당하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원산지 결정시에 전제조건으로서 제조 혹은 가공과 관련없는 특정조건의 충족을 요구해서는 안됨. 다시 말해서 상품의 국내산 여부 판정시 적용되는 원산지규정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되며 모든 체약국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원산지규정은 '포지티브 기준(positive standard)' 즉, 원산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함. 다만,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 기준을 명시한 '네거티브 기준(nagative standard)'도 포지티브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서라면 사용할 수도 있음.

- ○ 수출입자 또는 정당한 사유를 가진 제3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판정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늦어도 15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판정이 내려진 주변상황이 비교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동 판정은 3년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음.
- ○ 원산지규정의 개정 또는 신규 도입시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원산지판정과 관련한 모든 행정조치는 사법, 중재, 행정재판 또는 절차를 통하여 재검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판정결과가 수정 번복될 수 있음.

다.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협정

(1) 설치기구

- ○ 본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는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본 협정의 운용과 목적에 관련한 각종 사항을 관장하는 '원산지규정 위원회'와 원산지규정의 통일작업에 규정된 기술적사업을 수행하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임.
  - 원산지규정 위원회는 원산지규정 관련 기술위원회에 정보, 조언 및 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GATT 사무국이 본 위원회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음.
  -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는 원산지규정 위원회의 협력과 관세협력이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본 위원회의 사무국은 관세협력이사회 사무국이 담당하고 있음.

(2) 원산지규정의 개정 신규도입을 위한 정보처리 및 절차

○ 각 회원국은 WTO 협정 발효시 유효한 자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사법적 판정 및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90일 이내에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이는 다시 각 회원국에 배포되어야 함.

○ 통일 원산지규정 작성기간까지의 과도기간 중 원산지규정을 개정(사소한 규정은 제외)하거나 WTO 사무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규정을 신규도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의 효력발생 60일 이전에 공표되어야 함.

라. 원산지규정의 통일작업

(1) 목적 및 원칙

○ 원산지규정 통일작업의 주목적은 세계교역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데 있으며, 통일된 원산지규정의 작성을 위한 작업은 WTO의 각료회의(the Ministerial Conference) 주관하에 관세협력이사회와의 협력하에 다음과 같은 원칙에 준하여 추진해야 함.

- 원산지규정은 본 협정의 제1조에 명시된 각 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원산지는 특정상품의 완전생산공정이 이루어진 국가 또는 생산공정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변형을 발생시킨 국가에 부여되어야 함.
- 원산지규정은 객관적이며 이해 및 예측가능하게 작성되어야 함.
- 원산지규정은 교역목적을 직·간접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 또는 교란시키는 효과를 지녀서도 안되고, 원산지판정을 위해 불필요한 요건이나 제조공정과 무관한 요건을 부과해서도 안됨. 다만, 부가가치 기준의 적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 원산지규정은 일관성, 균일성, 불편부당, 합리적인 방식으로 집행

할 수 있어야 하며, 논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원산지규정은 포지티브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네거티브 기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2) 작업계획

○ 통일된 원산지규정의 제정을 위한 작업은 UR 종결후 가능한 한 빨리 개시되어야 하며, WTO 협정발효 후 3년 이내에 GATT의 '원산지규정 위원회'와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가 협력하여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설정하여야 함.

○ 원산지규정의 통일작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는 원산지규정 위원회와 원산지규정 관련 기술위원회이며,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원산지규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작업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기술위원회에 요청해야 함.

○ 원산지규정 관련 기술위원회는 원산지규정의 통일작업을 계획된 시한내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상품분류(HS코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본 작업에 대한 해석 및 의견을 원산지규정 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규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원산지규정 위원회와 기술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원산지규정의 통일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완전생산 및 최소한의 작업 또는 가공에 대한 통일된 정의개발(3개월 이내)
- 실질적 변형요건으로서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될 상품선정 및 이의 적용을 위한 HS 4단위 또는 6단위 작업(1년 3개월 이내)
- 실질적변형의 판정방법으로 보완기준(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 기준)이 적용 될 상품의 선정, 부가가치 비율 및 산정방법 개발, 특정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가공공정 명시(2년 3개월 이내)

(3) 원산지규정 위원회의 역할

○ 원산지규정 위원회는 상기 통일작업 내용과 관련하여 시한에 맞게 주기적으로 기술위원회의 해석과 의견을 검토해야 하며, 기술위원회로 하여금 통일작업의 개선 또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을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기술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지규정 위원회는 추가적인 작업요청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경우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하며, 기술위원회의 작업이 완결시 작업결과에 대한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4) 특혜무역 관련 원산지규정에 대한 공동성명

○ 부속서의 공동성명에 의하면 통일된 원산지규정의 제정 및 적용에 있어서 본 협정에서 정해진 기본원칙에 입각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4. 협정문의 평가

○ 각 회원국의 자의적인 원산지규정을 방지하고 국제교역환경 및 해외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원산지규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음.

○ WTO 협정상의 원산지규정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요규정은 향후 각 회원국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특혜원산지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한계내에서 작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4.1. 적용범위

○ 본 협정은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과 같은 지역간 통합이나 일방적 관세특혜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여타 일반적인 무역조치에 수반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최근 국제교역상 쟁점이 되고 있는 원산지규정의 역외차별 효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1.4.2. 원산지 판정기준

○ 원산지 판정기준의 기본원칙으로서 세번변경을 채택함으로써 원산지 규정의 명료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여타 보완적인 기준의 작성시에도 자의성 배제를 위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1.4.3. 원산지규정의 적용원칙

○ 원산지규정의 기본원칙 중 원산지규정 그 자체가 교역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특정제품의 국내산 여부 판정시 적용되는 원산지규정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내국민대우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국내산업의 피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각종 무역관련 조치를 취함에 있어 국내산 판정과 수출입상의 원산지판정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보호주의적 무역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원산지에 관하여 사전적으로 판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절차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경우 무역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2. 우리 나라의 원산지 표시제

2.1. 개 요

2.1.1. 의의

○ 원산지표시제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생산국가명(원산지)을 표시하고, 국내

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농림수산물은 생산지역명(시·군)을 표시하며, 농산가공품에도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및 생산지를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농산물구매시 폭넓은 선택기회를 부여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2.1.2. 도입배경

○ 1989년 GATT BOP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한국은 더 이상 국제수지의 적자를 이유로 한 농림수산물의 수입제한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 나라의 농림수산물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수입자유화 품목을 예시하고 개방하기에 이르렀음.

○ 수입개방화로 말미암아 최근 농림수산물의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림수산물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국내산 농림수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떨어지는 수입 농림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상황하에서 UR협상의 타결로 인한 개방화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생산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1년 7월부터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2.1.3. 추진경위

○ 1991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음.

- 대외무역법(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로 제정 공포, 1994년말까지 6차 개정)
- 동법 시행령(1987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2191호로 제정 공포,

1995년 7월까지 9차 개정)

- 대외무역 관리규정(1994년 5월 14일 통상산업부 고시 '94-57호)
-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53호로 제정 공포)
- 동법 시행령(1993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024호로 제정 공포)
- 동법 시행규칙(1994년 1월 19일 농림수산부령 제1131호로 제정 공포, 1994년 10월 13일 1차 개정)

○ 우리 나라의 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음.

- '대외무역법' 상에 원산지표시제 도입(1991. 7. 1)
  · 제31조의 2(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 '원산지관리세칙' 고시(1993. 5. 18) : 관세청
-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1993. 5. 1) : 농림수산부
  · 85개 품목 → 175개 품목
-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993. 6. 11) : 농림수산부
-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1993. 12. 14) : 농림수산부
- '수입 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시행령' 제정(1993. 12. 14) : 농림수산부
-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1994. 1. 5) : 농림수산부
  · HS 4단위 175개 품목 → 189개 품목(사실상 전품목)
-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1994. 1. 19) : 농림수산부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 제정(1994. 5. 19) : 농림수산부 고시
  · 대상품목: 수입농산물 189개 품목, 국내산 농수산물 65개 품목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 개정(1994. 11. 1):
  농림수산부 고시
  · 대상품목 중 국내산 농산물 65개품목 → 63개품목(인삼류 3개품목 → 1개품목)
  · 대상품목에 농산가공품 신설: 28개 품목류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검사 세부실시요령' 제정(1994. 6. 18):
  농검 고시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검사 세부실시요령' 개정(1994. 11.):
  농검 고시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 개정(1995. 9. 25):
  농림수산부 고시
  · 국내산 농림축수산물 대상품목 확대: 63개 품목 → 227개 품목
  · 농산가공품 대상품목 확대: 28개 식품류 → 54개 식품류
  · 표시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1차 주의경고 없이 미표시 적발시 과태료 처분
    → 과태료부과 최소단위의 상향조정(1만원 → 3만원)

2.1.4. 의무화 시행시기

○ 수입농산물: 1993. 7. 1부터 시행중
○ 국산농산물: 1995. 1. 1부터 시행중
○ 농산가공품: 1996. 1. 1부터 시행예정

2.1.5. 관련법령 및 규정

○ 대외무역법
  → 1986. 12. 31 제정(법률 제3895호)
○ 대외무역법 시행령
  → 1987. 6. 30 제정(대통령령 제12191호)
○ 대외무역관리 규정

→ 1993. 7. 1 제정고시(상공부고시 93-47호)

○ 원산지 관리세칙

→ 1993. 5. 18 제정고시(관세청고시 93-792호)

○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 1993. 6. 11 제정(법률 제4553호)

○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93. 12. 14 제정(대통령령 제14024호)

○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94. 1. 19 제정(농림수산부령 제1131호)

○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요령

→ 1993. 11. 19 제정고시(농림수산부 고시 93-50호)

○ 원산지표시 농수산물 검사요령

→ 1994. 11. 1 제정고시(농림수산부 고시 94-60호)

○ 기타 규정:

→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

2.2. 원산지 표시제의 실시요령

2.2.1.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가. 수입 농림수산물(1993. 7 지정고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의 2(제4항)에 의한 '수입 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요령'에 의거 농림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임.

○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수입 농림수산물은 전체 수입 농림수산물 255개 품목(HS 4단위 기준) 중 189개 품목으로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수입 농림수산물이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이라 할 수 있으며, 단지 산동물이나 활어 등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품목은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에서 제외됨.

○ 수입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을 HS 4단위 기준으로 하여 유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농산물(130개 품목)

곡　　류: 쌀, 밀, 보리, 옥수수, 조, 수수, 기장 등
두　　류: 콩(콩나물콩 포함), 팥, 녹두, 채두류 등
채유종실: 땅콩, 참깨, 들깨, 유채, 해바라기씨 등
채 소 류: 감자, 토마토, 건조채소, 마늘, 생강, 양파 등
과 실 류: 참다래, 파인애플, 바나나, 포도, 자몽, 레몬 등
약 초 류: 사인, 부자, 두충, 계피, 감초, 패모, 연자육 등
차　　류: 커피, 홍차, 녹차 등
화 훼 류: 안개초, 장미, 목단, 난초, 카네이션, 수선화 등
기　　타: 기타품목 등

· 임산물(15개 품목)

산 채 류: 고사리, 취나물 등
버 섯 류: 송이버섯, 표고버섯 등
과 실 류: 호도, 잣, 밤, 대추, 아몬드, 은행 등
편조물류: 대나무, 대나무제품 등
기타목재: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부채 등

· 축산물(33개 품목)

육　　류: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토끼고기 등
한 약 재: 녹용, 녹각, 사향, 우황 등
기타축산물: 천연꿀 등

· 수산물(11개 품목)

제3류: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냉동어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제12류: 로우커스트두·해초류와 기타조류·사탕무우와 사탕수수로

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제15류: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제16류: 육·어류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엑기스와 즙,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나. 국내산 농림수산물(1995. 1 지정고시: 1995. 9 개정)

○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을 HS 4단위 기준으로 하여 유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 농산물(107개 품목)

곡 류: 쌀(멥쌀, 찹쌀, 현미), 보리쌀(보리쌀, 할맥, 눌린보리쌀), 율무(율무, 율무쌀), 밀, 옥수수

잡곡류: 좁쌀, 수수쌀, 기장쌀, 메밀, 팝콘용옥수수

두 류: 콩(콩, 콩나물콩, 검정콩, 파란콩, 기타콩), 팥(검정팥, 붉은팥, 녹색팥), 녹두(녹두, 깐녹두)

서 류: 감자, 고구마

채유종실: 땅콩(피땅콩, 알땅콩, 볶은땅콩), 참깨(흰참깨, 검정참깨, 볶은참깨), 들깨

채소류: 마늘(통마늘, 깐마늘, 쪽마늘), 양파(피양파, 깐양파, 건조양파), 생강(통생강, 깐생강, 절단생강), 도라지(피도라지·깐도라지·찢은 도라지의 생것, 건조도라지), 더덕(피더덕·깐더덕·찢은 더덕의 생것,건조더덕), 건고추, 당근, 오이, 가지, 연근,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약재류: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더덕, 산수유, 산

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원황정, 음양곽, 익모초, 자소,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신선·건조·탈각·절단·찢은것 불문)

과실류: 사과, 배, 단감, 감귤, 감, 살구, 매실, 참다래, 멜론, 파인애플, 토마토, 앵두, 무화과, 유자, 버찌

버섯류: 영지버섯, 팽이버섯, 양송이

인삼류: 수삼

임산물(10개 품목)

산채류: 고사리(생고사리, 건고사리, 삶은 고사리), 취나물(생취나물, 건취나물, 삶은 취나물)

버섯류: 송이버섯, 표고버섯(생것, 건조·절단한 것)

견과류: 호도(피호도, 깐호도), 잣(피잣, 깐잣), 밤(생밤, 건조밤, 깐밤, 찐밤), 대추(생대추, 건대추), 은행(피은행, 깐은행), 곶감

축산물(10개 품목)

육 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흑염소)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기타축산물: 천연꿀(한봉, 양봉), 녹용, 녹각

수산물(100개 품목)

→ 수산물류의 범위는 신선·냉장·냉동·건조·훈제·염장·염수장한 것으로서 처리형태를 불문하며, 비식용 및 젓갈류는 제외함.

어 류: 가오리류, 가자미류, 까나리, 갈치류, 감펭류, 강달어, 갯장어, 고등어, 꼬치, 꽁치, 넙치류, 노래미, 농어, 능성어, 다랑어류, 달고기, 대구류, 도루묵, 돔류, 망둥이

류, 매퉁이류, 먹장어, 메기류, 멸치, 명태, 방어류, 밴댕이, 뱀장어, 병어, 보리멸, 복어류, 볼락류, 붕장어, 삼치, 새치류, 상어류, 서대류, 송어류, 숭어류, 실치, 아귀, 양미리, 양태, 어란류, 연어류, 임연수어, 전갱이, 전어, 정어리, 조기류, 준치, 쥐치, 청어, 통치, 홍어, 기타 어류

갑각류: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갑각류

패 류: 가리비, 개량조개, 고둥류, 고막류, 골뱅이류, 굴류, 논우렁이, 동죽, 맛류, 바지락류, 백합류, 새조개, 소라, 오분자기, 재첩, 전복류, 키조개, 피조개, 홍합, 기타패류

연체동물류: 갑오징어류, 꼴뚜기, 낙지, 문어류, 오징어류, 쭈꾸미, 기타 연체동물류

해조류: 김, 다시마, 미역, 우무가사리, 청각, 톳, 파래, 기타 해조류

수생동물류: 미더덕, 우렁쉥이, 해삼, 해파리, 기타 수생동물류

다. 농수산물 가공품(1994. 11 지정고시: 1995. 9 개정)

· 과 자 류: 잼류, 식빵
· 유가공품류: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류, 분유류, 치이즈, 버터류
· 식육제품류: 햄, 소시지, 베이컨류
· 통·병조림류: (농산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살구, 매실, 딸기, 자두, 참다래, 토마토, 또는 밤을 원료로 사용한 것 (수산물) 고등어, 전갱이, 삼치, 정어리, 꽁치, 다랭이, 연어 또는 패류를 원료로 사용한 것
· 두부류: 두부류 중 포장된 것, 묵류 중 포장된 것
· 식용유지류: 참기름, 들기름, 대두유, 옥수수유, 낙화생유
· 면 류: 국수, 당면, 라면

· 다 류: 침출차(녹차, 홍차, 우롱차, 보리차, 결명자차), 추출차(칡차, 구기자차, 당귀차, 두충차, 오가피차, 오미자차, 영지차, 생강차), 분말차(땅콩차, 율무차), 과실차(유자차, 대추차)

· 청량음료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류, 살구, 매실, 자두, 참다래, 토마토, 딸기, 채소를 원료로 사용한 것의 천연과즙음료, 과즙음료, 희석과즙음료, 과육음료, 과립과즙음료, 혼합음료

· 인삼제품류: 백삼, 홍삼, 태극삼, 농축인삼류, 인삼분말, 인삼차류, 당침인삼

· 조미식품류: 간장, 된장, 고추장, 케찹

· 절임식품류: 마늘, 양파, 오이, 무 절임류 중 포장된 것

· 기타 단순가공식품류: 땅콩가공품, 견과류가공품, 과실·채소류가공품(고추가루 포함), 곡물가공품(쌀, 찹쌀, 보리, 밀, 팥, 녹두), 특용·기호작물가공품, 육포류, 조미어포류, 조미김

2.2.2. 원산지표시 방법

가. 국산 농림수산물

(1)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림수산물

○ 당해 농림수산물을 생산한 시·군의 지역명,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이름,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주소, 생산자 또는 포장자의 전화번호를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표시함.

(2) 散物로 판매하는 농림수산물

○ 당해 농림수산물을 생산한 시·군의 지역명을 표시판 또는 팻말로 표시함.

(3) 낱개로 판매하는 농산물

○ 당해 농림수산물을 생산한 시·군의 지역명을 현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팻말로 표시함.

나. 수입 농림수산물

(1) 원산지표시 요건

(가)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

○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나라를 의미함(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보호령 등은 별도의 국가로 간주함). 예를 들면, MADE IN EC는 불인정되며, PUERTO RICO산의 경우 MADE IN U.S.A로 표시가 가능함.

- 원산지 국가명을 한글이나 한문으로 표시할 경우
  → 제조국: 중국(또는 中國), 원산국: 중국(또는 中國), 중국산(또는 中國産)
- 원산지 국가명을 영문으로 표시할 경우
  →MADE IN U.S.A, PRODUCT OF U.S.A

· 「MADE BY 회사명+주소+국가명」이나 「상호명+주소+국가명」등과 같이 최종구매자가 오인의 우려없이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형태는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

·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로의 표시도 가능하지만,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표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인정하지 않음.

(나)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표시

○ 글씨체 및 크기는 적정크기의 인쇄체로 명료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구입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없어야 함.

- 즉, 2개국 이상의 주소가 있거나 원산국 이외의 국가와 관련된 표시(국명, 소재지, 회사명 등)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표시가 상표 또는 다른 표시 등에 의해 숨겨지지 않아야 함.

(다)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

○ 최종구매자가 확인하기 용이한 장소에, 상표의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라)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 의도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최종구매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그 표시가 남아 있어야 함.

(2) 원산지 표시방법

(가) 통관된 상태 그대로 유통되는 농림수산물

○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관리세칙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의해 표시하되, 수입통관 단계에서 세관으로부터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원산지표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

①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②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③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④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의도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배포 보관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최종구매자에게 도달될 수 있는 경우,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

(나) 포장되어 유통되는 농림수산물

(통관된 후 재포장하여 판매되는 농림수산물 포함)

○ 표시위치: 포장전면 좌측상단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

○ 인쇄색도: 포장지 바탕색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표시방법: ① 포장지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랩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스티카 부착도 예외적으로 허용

② 그물망 재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부착 및 내찰 허용

표 3-1 포장유통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활자크기

포장전면 크기	활 자 크 기
30㎝ 이상 × 20㎝ 이상 또는 600㎠ 이상	38 Point 이상
15㎝ 이상 × 10㎝ 이상 또는 150㎠ 이상	20 Point 이상
10㎝ 이상 × 5㎝ 이상 또는 50㎠ 이상	12 Point 이상
10㎝ 미만 × 5㎝ 미만 또는 50㎠ 미만	8 Point 이상

(다) 낱개 또는 산물로 유통되는 농림수산물

(통관된 후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되는 농림수산물 포함)

표 3-2 낱개(산물)유통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

구 분	표 시 방 법	표 시 크 기
낱개판매	현품에 스티카 부착	가로 3㎝×세로 2㎝이상 또는 직경 2.5㎝이상
용기판매	용기에 표시	가로 15㎝×세로 10㎝ 이상
〃	팻말표시	가로 15㎝×세로 10㎝, 높이 10㎝이상
산물거래	상품안내 표시판 (판매장소)	가로 30㎝×세로 50㎝이상
진열판매	상품안내 표시판 (진열대)	가로 7㎝×세로 5㎝이상

(라) 부위표시판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법

○ 가로 11㎝ 이상×세로 11㎝ 이상 크기의 표시판에 부위명, 용도, 100g당 가격, 원산지(표시크기: 3㎝ 이상, 글자크기: 50point 이상) 등을 표시함.

다. 농수산물 가공품

(1) 표시위치

○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중 '원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함(식품위생법령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품목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표시).

(2) 활자의 크기

○ 원료명 및 함량표시란의 활자는 7.5point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되, 용기 포장의 표면적이 150㎠ 이하인 식품의 경우 7.5point 미만으로 표시가능함.

(3) 표시색도

○ 원산지표시 색깔은 원포장지의 전체적인 색깔과 구별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색깔로 해야 함.

(4) 표시변경

○ 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원료의 원산지별 배합비율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종전의 원산지별 원료함량에 대하여 그 증감범위가 20% 이내일 때에는 이미 종전의 원료배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는 재고량이 모두 사용될 때까지 기존의 재고 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2.2.3. 원산지표시 단속기관

가. 원산지표시 검사기관

○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표시 검사기관은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으로 되어 있으며, 검사기관에서는 시판품의 검사 및 원산지표시 정정 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유통관리 전담기관

○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상 유통관리 전담기관은 농림수산물의 유통 및 검사관련 행정기관 중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농·축·임산물은 국립농산물검사소, 수산물은 국립수산물검사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통관리 전담기관의 기능은 원산지표시대상 농림수산물 및 가공품의 조사·검사 및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함.

다. 원산지표시 검사공무원

○ 유통관리 전담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농수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검사경험이 풍부한 자를 검사원으로 임명하며, 검사원의 역할은 원산지표시 대상 농림수산물의 시판품조사 및 검사업무를 담당함.

- 검사공무원은 시판품조사 및 검사시 농수산물 유통관리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유통업소에 제시해야 함.

2.2.4.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대한 시판품조사 및 검사

○ 검사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 대상 농림수산물의 시판품조사 및 검사시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설검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요령에 의

거 실시해야 함.

가. 검사대상 및 장소

○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림수산물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가공업자의 사무소·영업소·공장 또는 창고 등을 검사대상으로 함.

나. 검사항목

① 원산지표시의 이행 여부
② 원산지표시 방법의 적정성 여부
③ 원산지의 허위표시 여부
④ 원산지표시 농림수산물의 구매 및 판매에 관한 사항
⑤ 원산지표시 농림수산물의 원료수불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원산지표시 농림수산물 검사요령'에서 정하는 사항

다. 검사방법

(1) 물품검사

○ 물품검사는 당해 원산지표시 농림수산물의 외관상의 특성 및 형태, 맛, 냄새 등을 이용한 간이방법에 의해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같은 간이방법으로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음.

(2) 장부 및 서류검사

① 수입업자와 가공업자와의 원료수불 내역
② 수입업자 및 가공업자와 판매업자와의 거래내역
③ 기타 필요한 사항

○ 장부 및 서류검사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검사원은 명확한 증거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소정확인서에 의한 수검자(대리인)로부터 위반사항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수검자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기피)할 때에는 검사원 2인의 연명날인을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3)수검자 입회조치

○ 검사원은 물품검사 및 장부·서류 검사시 반드시 수검자를 입회시켜야 함. 다만, 수검자가 부재중이거나 입회불응시 관계검사원을 입회시킬 수 있음.

라. 시료채취

(1) 목적

○ 검사대상 물품을 정밀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판품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2) 시료채취 방법

○ 당해 농림수산물의 포장여부 및 적재규모와 가공품의 적재크기에 따라 시료채취 부위를 선정한 후 시료채취에 알맞는 기구를 사용하여 시료를 무작위 추출한 다음 잘 혼합하여 분석에 필요한 품목별 적정량의 시료 2점을 준비함.

○ 시료채취시에는 시료채취용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종이봉투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닐봉투로 속포장한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채취견본에 대한 조치

○ 검사원이 시료를 채취할 경우 채취현장에서 소정양식의 시료채취 확

인서를 작성하고, 채취시료를 수검자보관용 1점과 검정의뢰용 1점으로 분할하여 수검자의 입회하에 각각 봉함하고 상호 날인하여야 함. 다만, 수검자가 입회에 불응할 경우 관계검사원의 입회하에 각각 봉함하고 상호 날인도 허용됨.

(4)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특별사유 발생시

○ 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수검자로부터 시료채취 불가사유서를 징구하여 검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당해 수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원은 그 상황을 기재하여 검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검사비용의 부담

○ 시판품의 정밀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채취비 및 검사비용은 검사기관의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해당 검사기관이 부담함.

바. 채취시료의 검정의뢰 방법 및 검정기관

○ 검사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서'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는 채취시료와 함께 해당 검정기관에 송부하고 1부는 검사기관에서 보관함.

○ 정밀검사를 위해 채취시료를 검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 농산물: 국립농산물검사소 시험소
- 축산물: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 임산물: 산림청 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 수산물: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물검사소 및 지소
- 가공품: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사. 시료의 검정결과 통보

○ 당해 검정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정의뢰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시료검정결과를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료검정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검정기관은 시료를 정밀검사한 후 그 시료를 냉장 또는 냉동보관 방법 등을 통해서 시료의 변질 또는 품위손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밀검사 결과통보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함. 다만, 보관중 시료가 변질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정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이를 폐기처분할 수도 있음.

2.2.5.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의 부과통지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관련법령 규정(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처분내역을 통지하여야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1) 국내산 및 수입 농림수산물

○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된 국내산 농림수산물 및 수입 농림수산물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 포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물품의 판매장소에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에 적발 당일의 국내산 도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함.

② 상기 ①호의 국내산 도매가격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 시장의 가격이 없을 때에는 인근 법정도매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다만, 기준 도매가격이 없을 때에는 당해품목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③ 과태료의 부과금액 최소단위는 3만원으로 하고, 3만원 이상은 사사오입하여 만원단위로 부과하되, 부과되는 과태료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농수산물 가공품

○ 원산지표시 대상 농수산물 가공품에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아니하고 판매한 가공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과태료 부과기준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① 1차 위반자: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② 2차 이상 위반자: 상기 ①호의 1차 위반자가 처분을 받은 다음날 이후에 제조 가공한 제품에 다시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원산지표시에 불응하는 자

○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1호(1995. 9. 25)

① 산정기준

○ 연간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의 당해품목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영업,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전년도의 1년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의 1일 평균 매출액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연간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함.

② 과태료 부과기준액

표 3-3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기준액(연간매출액)	1차 위반자	2차 이상 위반자
200백만원 미만	25만원	50만원
200백만원 이상 ~ 400백만원 미만	50	100
400백만원 이상 ~ 600백만원 미만	100	200
600백만원 이상 ~ 800백만원 미만	150	300
800백만원 이상~ 1,000백만원 미만	200	400
1,000백만원 이상 ~ 1,200백만원 미만	250	500
1,200백만원 이상 ~ 1,400백만원 미만	300	600
1,400백만원 이상 ~ 1,600백만원 미만	350	700
1,600백만원 이상 ~ 1,800백만원 미만	400	800
1,800백만원 이상 ~ 2,000백만원 미만	450	900
2,000백만원 이상	500	1,000

2.2.6. 검사업무 담당기관의 기타 행정업무 사항

○ 검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은 소속 검사원의 검사내역(원산지표시 검사일지)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내역(위반업소 처분대장)을 기록 비치해야 하며, 원산지표시 단속 및 홍보실적을 월별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

○ 유통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2.2.7.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고발포상금 제도

○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를 고발한 자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정신을 높여 농림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 3. 22일자로 '농

림수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고발포상금지급 요령'(농림수산부 공고 제95-20호)을 제정공고 하였음.

○ 본 요령에 의하면 포상금은 '대외무역법' 제31조의 2(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의거 농림수산물(수입쇠고기 제외)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에 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고발처인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 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국립농산물검사소와 국립수산물검사소 및 그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음.

○ 고발포상금은 매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며, 당해 건에 대하여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농림수산물 유통관리 전담기관의 장이 그 공로를 참작하여 그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비율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고발사항을 접수받은 주무관청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한 후 고발자에게 통지를 하는 고소·고발사건 처분통지서 사본과 포상금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물 유통관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확정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또는 지사장 및 고발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또는 지사장은 농림수산물 유통관리 전담기관장의 포상금지급 결정내용에 따라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은행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처리하고, 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주무관청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또는 지사장은 고발사항에 대하여 일체

표 3-4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고발포상금 지급기준

부 정 유 통 물 량 (건당 가액)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민 간 인	공 무 원
20만원 미만	50,000원	30,000원
2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000	50,00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00,000	100,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0,000	150,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400,000	200,000
1,000만원 이상	500,000	250,000

자료: 농림수산부.

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농림수산물 유통관리 전담기관의 장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포상금지급 신청과 포상금 지급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함.

3. 우리 나라의 원산지표시제 운용현황 및 문제점

3.1. 대상업소 현황

○ 1995년 8월 현재 국립농산물검사소 지소(11개 지소) 관할 전국의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수는 농산물 취급업소 157,183개소, 축산물 취급업소 47,725개소,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품 취급업소 22,739개소 등 총 227,647개소에 달하고 있음.

- 이를 농검지소별로 보면, 경기지소(서울지역 포함)의 경우 80,560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경북지소(대구지역 포함) 32,095개소, 경남지소 24,055개소, 전남지소(광주지역 포함) 19,271개소, 충남지소(대전지역 포함) 17,810개소의 순이며, 제주지소의 경우가 3,168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반해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과 관련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검의 기술인력은 현재 전국적으로 907명에 불과함.

- 이 결과 농검 기술인력 1인당 원산지표시 관리대상 업소수가 많아 지도단속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농검의 기술인력 1인당 원산지표시 관리대상 업소수는 전국 평균적으로 볼때 약 251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검사공무원 1인당 관리대상 업소수는 농검지소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부산지소의 경우가 957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지소 831개소, 인천지소 622개소, 제주지소 352개소, 경북지소 224개소, 경남지소 196개소의 순이며, 전북지소의 경우가 90개소로 가장 적음.

표 3-5 농검지소별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현황(95. 8 현재)

단위: 개소

지소	관리가능인원	농산물		가공품		축산물		계	
		대상업소수	1인당업소수	대상업소수	1인당업소수	대상업소수	1인당업소수	대상업소수	1인당업소수
부산	14명	6,814	487	1,901	136	4,688	334	13,403	957
인천	17	6,918	407	1,181	69	2,475	146	10,574	622
경기	97	54,778	565	7,832	81	17,950	185	80,560	831
강원	62	5,934	96	468	7	1,615	26	8,017	129
충북	60	6,247	104	1,137	19	1,732	29	9,116	152
충남	101	12,990	129	1,535	15	3,285	32	17,810	176
전북	106	7,331	69	587	5	1,660	16	9,578	90
전남	175	13,452	77	2,079	12	3,740	21	19,271	110
경북	143	22,546	158	3,780	26	5,769	40	32,095	224
경남	123	17,710	144	2,056	17	4,289	35	24,055	196
제주	9	2,463	274	183	20	522	58	3,168	352
합계	907	157,183	173	22,739	25	47,725	53	227,647	251

자료: 국립농산물검사소.

○ 원산지표시 대상업체수를 유통업 형태별로 보면 우선 농산물의 경우는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양곡상 등 양곡관련업체가 49,235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슈퍼 및 체인점 31,465개소, 노점상 29,986개소, 산지수집상 2,393개소, 소포장업체 1,905개소, 직판장 및 공판장 794개소, 수입업체 736개소 그리고 백화점 쇼핑센타 등 대형 유통업체 411개소의 순임.

○ 축산물의 경우는 일반정육점·수입쇠고기전문점·한우고기전문점 등 식육점이 47,447개소, 소포장 가공업체를 포함한 수입업체가 278개소이며, 농산가공품의 경우는 식용유지류가 11,395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과자류 684개소, 절임식품류 315개소, 다류 193개소, 묵류 170개소, 통조림 및 병조림류 91개소, 육가공품류 88개소, 청량음료류 72개소 그리고 인삼제품류 48개소의 순으로 나타났음.

3.2. 원산지표시 이행에 관한 지도단속

○ 1994년 2월 국립농산물검사소가 농림수산물의 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본소 및 지소에 원산지계가 신설되고 전담조직(원산지표시 이행단속반)을 구성하여 동년 3월 중에는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였고, 동년 4월부터는 본격적인 원산지표시 관리업무(지도단속)를 추진해 오고 있음.

3.2.1. 지도단속 상황

○ 농림수산물 유통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과 관련된 농검의 지도단속 업무로는 동 제도의 취지, 목적, 내용, 표시방법 등을 알리는 각종 홍보물(팜프렛, 스티카)을 배포하는 한편 주로 산물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농림수산물에 부착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원산지표시 팻말'(플러스틱 또는 코팅제조)의 부착판매 권장 및 제작알선도 하고 있음.

○ 유통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단속주기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대 도시의 경우는 주 2회, 기타 시 지역은 주 1회 그리고 군지역은 월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검의 기술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단속반은 6대 도시의 경우는 2개반, 기타 지역은 1개반을 편성하여 상주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단속주기나 단속반 편성이 규정보다 확대편성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우리 나라의 원산지표시제상 원산지표시 방법에 있어서 수입 농림수산물의 경우는 생산국명을 표시하고, 국내산 농림수산물은 생산지 시·군명을 표시하되 양곡류 및 축산물 등과 같이 유통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생산물이 혼합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시·군명 대신에 '국내산'으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산지명 표시방법을 제외하고는 국내외산을 막론하고 표시방식에 차별이 없으므로 현재 WTO협정에 따라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국제적인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뿐만 아니라 현행 우리 나라의 원산지표시제에 의하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원칙이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있어서도 국내산이나 수입산 농림수산물에 관계없이 무차별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 역시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1995년 이전에는 수입 농림수산물에만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되어 원산지미표시 또는 허위표시·위장판매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국내산 농림수산물에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여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3.2.2. 단속실적

○ 국내산 및 수입 농림수산물의 유통관리 전담기관인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전국의 지소(출장소)를 통해 1995. 1~10(10개월간) 기간중에 실시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품목류별, 유통업소 형태별 원

산지표시 단속실적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1995년 1월부터 10월까지 농검(지소별)에서 전국의 농림수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단속한 결과 총 검사회수는 11,788회였으며 이에 동원된 농검의 기술인력(연인원)은 25,848명, 검사장소수는 196,559개소, 검사건수는 856,510건이었고 이 중에서 적발건수(미표시, 허위표시, 규격위반 등)는 71,200건이었고 위반업소 수는 총 39,513업소이었음.

-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에 대한 검사건수에 비해 적발건수 비율이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검사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더구나 적발사항도 위장·허위표시 등 근원적인 부정유통 행위는 드물고 대부분이 원산지 미표시 업소인 점을 감안해 볼때 검사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더욱 어려움.

○ 농검에서 실시한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결과를 지소별로 보면 검사회수는 경북, 전남, 경남, 충남, 경기의 순이었고 검사인원수의 경우는 경기, 경북, 전남, 충남, 경남의 순으로 많이 동원되었으며, 검사장소수 및 검사건수는 전남, 경기, 충남, 경북, 경남의 순으로 많았고 적발건수 및 위반업소수는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충남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단속실적을 월별로 보면 연초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초에는 연중 단속계획(단속반 편성, 단속시기 및 단속지역 결정 등)을 수립하고 중·하반기 동안에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 특히, 9월 중의 단속실적이 많은 이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유통업소의 위반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집중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검의 시기별 업무수행 상황으로 보아 10월 중에는 추곡수매검사 업무로 인해 이때는 원산지표시 관리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표 3-6 농검지소별 원산지표시 단속실적(1995년도 실적기준)

지 소 별	검사회수 (회)	검사인원 (명)	검사장소수 (개소)	검사건수 (건)	적발건수 (건)	위반업소수 (업소)
부 산	474	961	8,518	66,891	6,325	2,576
인 천	389	888	4,807	25,652	2,012	1,174
경 기	1,375	4,085	32,971	126,815	11,156	6,369
강 원	1,001	2,055	14,110	60,557	5,135	2,747
충 북	727	1,571	15,253	58,462	3,669	2,127
충 남	1,475	3,132	22,270	111,557	7,937	4,658
전 북	1,200	2,559	18,901	81,710	5,847	3,761
전 남	1,712	3,629	34,786	113,227	7,633	4,722
경 북	1,803	3,799	21,965	88,673	8,378	5,103
경 남	1,522	2,936	20,915	114,461	12,313	5,775
제 주	110	233	2,063	8,505	795	501
계	11,788	25,848	196,559	856,510	71,200	39,513

자료: 국립농산물검사소.

○ 농검의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을 기술계 공무원 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 검사회수는 13.0회, 검사장소수는 216.7개소, 검사건수는 944.3건, 적발건수는 78.5건으로서 원산지표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농산물 품질인증, 표준규격 출하 및 추·하곡 수매검사업무 등 여타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과다한 업무량임을 알 수 있음.

○ 농검 기술계공무원 1인당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지소별로 보면 검사회수의 경우는 부산지소가 33.9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지소가 22.9회였으며, 여타 지소에서는 9.8~16.1회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 검사장소 수의 경우 역시 부산지소가 608.4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지소의 339.9개소, 인천지소의 282.8개소, 충북지

소의 254.2개소, 제주지소의 229.2개소, 강원지소의 227.6개소의 순이었음.

표 3-7 월별 원산지표시 단속실적(1995년도 실적기준)

월 별	검사회수 (회)	검사인원 (명)	검사장소수 (개소)	검사건수 (건)	적발건수 (건)	위반업소수 (업소)
1월	890	2,035	14,905	46,057	4,366	1,925
2월	1,396	3,094	15,480	60,792	6,438	2,827
3월	1,163	2,595	14,349	52,039	5,415	2,868
4월	1,252	2,813	19,406	66,366	9,436	5,052
5월	1,177	2,650	20,413	72,042	9,368	4,706
6월	1,294	2,867	22,058	108,875	9,332	4,805
7월	937	2,089	18,532	88,999	5,484	3,362
8월	1,311	2,843	24,932	126,585	7,558	4,812
9월	1,532	3,329	30,761	152,489	10,046	6,660
10월	836	1,533	15,784	82,266	3,757	2,496
계	11,788	25,848	196,559	856,510	71,200	39,513

자료: 국립농산물검사소.

○ 검사건수 및 적발건수의 경우를 보면 부산지소가 4,777.9건 검사에 451.8건 적발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천지소의 1,508.9건 검사에 118.4건 적발, 경기지소의 1,307.4건 검사에 115.0건 적발의 순이었으며 여타지소에서는 620.1~1,104.5건을 검사하여 43.6~100.1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검사건수 대비 적발건수 비율은 전국평균 8.3%이었으며, 이를 농검지소별로 보면 경남지소의 경우 10.8%로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산지소와 경북지소가 각각 9.5%, 제주지소 9.3%, 경기지소 8.8%, 강원지소 8.5%의 순이었음.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총 위반업소 39,513업소 중에서 고발 198건(0.5%), 과태료부과 3,946건(10.0%), 1차 미표시업소에 대한 주의경고가 25,446건(64.4%), 그리고 표시는 하였으나 규정대로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현지시정이 9,923건(25.1%)이었으며, 총 과태료부과 금액은 14,764만원으로 과태료부과 건당 평균 과태료부과 금액은 3.7만원 수준임.

○ 이를 농검지소별로 보면 대상업소 수가 많고 대도시 소비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 경북, 경남, 충남, 전남지소의 경우가 타지소에 비해 고발이나 과태료부과 업소가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을 월별로 살펴 보면 연초보다는 중·하반기로 갈수록 고발건수나 과태료부과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월 중에 월등히 많았던 것은 추석 전의 집중단속 결과로 판단됨.

표 3-8 농검지소별 기술계 공무원 1인당 단속실적

지 소 별	기 술 계 공무원수	1인당 단속 실적			
		검사회수	검사장소수	검사건수	적발건수
부 산	14명	33.9회	608.4개소	4,777.9건	451.8건
인 천	17	22.9	282.8	1,508.9	118.4
경 기	97	14.2	339.9	1,307.4	115.0
강 원	62	16.1	227.6	976.7	82.8
충 북	60	12.1	254.2	974.4	61.2
충 남	101	14.6	220.5	1,104.5	78.6
전 북	106	11.3	178.3	770.8	55.2
전 남	175	9.8	198.8	647.0	43.6
경 북	143	12.6	153.6	620.1	58.6
경 남	123	12.4	170.0	930.6	100.1
제 주	9	12.2	229.2	945.0	88.3
전 국	907	13.0	216.7	944.3	78.5

자료: 국립농산물검사소.

표 3-9 농검지소별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95. 1~10)

지소별	고발	과태료 부과		주의경고	현지시정	계
		건수	금액			
부산	- 건	133건	782만원	1,386건	1,057건	2,576건
인천	13	126	647	904	131	1,174
경기	63	590	2,716	5,246	470	6,369
강원	15	328	814	1,805	599	2,747
충북	7	221	821	1,484	415	2,127
충남	17	459	1,624	2,975	1,207	4,658
전북	15	343	1,401	1,826	1,577	3,761
전남	16	469	1,356	2,969	1,268	4,722
경북	41	569	2,598	3,269	1,224	5,103
경남	11	662	2,170	3,285	1,817	5,775
제주	-	46	195	297	158	501
계	198 (0.5)	3,946 (10.0)	14,764	25,446 (64.4)	9,923 (25.1)	39,513 (100.0)

자료: 국립농산물검사소.

표 3-10 월별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

월별	고발	과태료 부과		주의경고	현지시정	계
		건수	금액			
1월	1건	47건	127만원	1,085건	792건	1,925건
2월	1	55	232	1,780	991	2,827
3월	1	103	276	1,243	1,521	2,868
4월	4	356	1,573	3,447	1,245	5,052
5월	11	422	1,978	3,420	853	4,706
6월	26	469	2,017	3,386	924	4,805
7월	41	366	1,213	2,239	716	3,362
8월	27	605	2,081	3,131	1,049	4,812
9월	49	1,122	3,819	4,345	1,144	6,660
10월	37	401	1,448	1,370	688	2,496
계	198	3,946	14,764	25,446	9,923	39,513

자료: 국립농산물검사소.

○ 1994년(4~12월간)에 비해 1995년(1~10월간)의 원산지표시 이행 실태 단속실적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즉, 검사회수는 1.74배, 검사연인원은 1.65배, 검사장소수는 2.32배로 각각 늘어났고 검사건수는 4.53배, 적발건수는 5.62배, 그리고 위반업소수도 4.49배나 증가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고발 2.71배, 과태료부과는 3.78배, 주의경고 5.16배, 그리고 현지시정이 3.59배로 현저히 늘어났음.

○ 이와 같이 1994년도에 비해 1995년도의 단속실적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1995년도부터 국내산 농림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어 원산지표시 대상업소가 절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95년 10월말 현재 국내산과 수입산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을 비교해 보면 검사회수, 검사인원 및 검사장소수는 국내산의 경우가 수입산에 비해 다소 많으나 검사건수, 적발건수 및 위반업소수는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고발건수는 국내산의 경우가 수입산에 비해 3.7%로서 수입 농림수산물의 부정유통(위장 허위 혼합판매 등)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반면에 과태료부과, 주의경고 및 현지시정은 국내산의 경우가 수입산에 비해 1.4~2.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 농림수산물의 고발건수가 국내산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은 수입 농림수산물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판매하는 업소(주로 재래시장 또는 노점상인의 경우)도 있고, 수입산임을 알면서도 이를 표시할 경우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 위반하는 업소 그리고 관광단지 또는 특산품 생산지역을 대상으로 수입 농림수산물을 고정적으로 공급해 주고 판매량에 대해 판매수당만을 받는 무허가업소(노점상)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에 반해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과태료부과, 주의경고 및 현지시정건수가 수입산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은 수입산은 '94년부터

표 3-11 연도별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연 도	검 사 회 수 (회)	검 사 인 원 (명)	검 사 장소수 (개소)	검 사 건 수 (건)	적 발 건 수 (건)	위 반 업소수 (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건)			
							고 발	과태료부과	주의경고	현지시정
1994 (4-12월)	6,760	15,687	84,701	189,011	12,667	8,810	73	1,044 (6,558만원)	4,932	2,761
1995 (1-10월)	11,788	25,848	196,559	856,510	71,200	39,513	198	3,946 (14,764만원)	25,446	9,923
계	18,548	41,535	281,260	1,045,521	83,867	48,323	271	4,990 (21,322만원)	30,378	12,684
95/94 (배)	1.74	1.65	2.32	4.53	5.62	4.49	2.71	3.78 (2.25)	5.16	3.59

자료: 국립농산물검사소.

시행되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지만 국내산의 경우는 '95년부터 시행된 관계로 홍보미흡 내지는 유통업자의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농산물 유통업소 형태별 검사장소(업소)수를 보면 총 196,559개소의 업소를 단속점검한 결과 수퍼가 38,693개소(1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점상 36,547개소(18.6%), 양곡상 28,307개소(14.4%), 식육점 18,864개소(9.6%), 청과상 18,631개소(9.5%), 한약상 7,288개소(3.7%), 소분업자 4,737개소(2.4%), 백화점 1,128개소(0.6%)의 순이었음.

- 업소형태별 단속결과로 보아 원산지표시가 잘 이행되고 있는 곳 보다는 상대적으로 위반소지가 많은 즉, 원산지표시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장소(업소)를 중점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단속결과 적발건수를 단속대상 업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류별로 살펴 보면 총적발건수 71,200건 중에서 과실

류가 14,050건(1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채소류 12,137건(17.0%), 채유종실류 9,326건(13.1%), 곡류 8,321건(11.7%), 산채류 7,106건(10.0%), 약재류 5,885건(8.3%), 두류 5,874건(8.3%)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2 산지별 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95. 10 현재)

구 분	단위	국내산(A)	수입산(B)	A/B(%)	합 계*
검사회수	회	11,557	11,020	104.9	11,788
검사인원	명	25,578	24,868	102.9	25,848
검사장소수	개소	165,208	128,239	128.8	196,559
검사건수	건	538,881	317,629	169.7	856,510
적발건수	건	47,365	23,835	198.7	71,200
위반업소수	업소	28,633	17,377	164.8	39,513
조치내역					
○ 고 발	건	7	191	3.7	198
○ 과태료부과					
- 부과건수	건	2,501	1,794	139.4	3,946
- 부과금액	만원	9,001	5,763	156.2	14,764
○ 주의경고	건	17,729	12,413	142.8	25,446
○ 현지시정	건	8,396	2,986	281.1	9,923

*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회단속시 국내산과 수입산을 모두 검사하는 경우와 한 업소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을 모두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자료: 국립농산물검사소.

표 3-13 유통업소 형태별 검사장소(업소) 수

단위: 개소

지소별	양곡상	수 퍼	청과상	백화점	식육점	한약상	수 입 업 자	소 분 업 자	노점상	기 타	합 계
부 산	962	987	336	28	955	721	60	116	1,362	2,991	8,518
인 천	528	567	307	133	805	229	27	181	548	1,482	4,807
경 기	4,331	5,694	3,821	373	3,973	1,388	97	1,200	3,326	8,768	32,971
강 원	2,052	2,061	1,201	109	1,008	300	19	182	3,279	3,899	14,110
충 북	2,364	4,681	1,454	27	1,125	542	57	470	3,070	1,463	15,253
충 남	2,872	5,230	1,527	48	1,694	871	40	297	5,715	3,976	22,270
전 북	3,036	5,103	2,566	51	2,321	694	20	179	2,077	2,854	18,901
전 남	5,360	7,391	3,818	143	2,903	821	16	469	6,631	7,234	34,786
경 북	3,848	3,162	1,432	101	2,253	726	109	261	4,760	5,313	21,965
경 남	2,814	3,370	1,863	109	1,744	964	91	1,366	4,958	3,636	20,915
제 주	140	447	306	6	83	32	4	16	821	208	2,063
계	28,307	38,693	18,631	1,128	18,864	7,288	540	4,737	36,547	41,824	196,559

자료: 국립농산물검사소.

표 3-14 품목류별 적발(위반)건수

단위: 개소

지소별	곡 류	두 류	채 유 종 실	채소류	산채류	과실류	버섯류	약재류	육 류	기 타	합 계
부 산	707	410	741	851	654	1,120	373	608	128	733	6,325
인 천	200	165	209	340	145	394	93	203	192	71	2,012
경 기	1,135	799	1,447	2,092	1,111	2,086	592	973	649	272	11,156
강 원	534	428	610	783	726	1,303	326	250	82	93	5,135
충 북	457	310	399	639	492	719	274	249	31	99	3,669
충 남	1,130	519	835	1,287	825	1,550	425	767	163	436	7,937
전 북	768	423	819	1,255	648	997	363	373	53	148	5,847
전 남	766	640	1,019	1,582	662	1,561	351	626	169	257	7,633
경 북	1,193	783	1,240	1,397	774	1,530	406	623	211	221	8,378
경 남	1,365	1,302	1,896	1,809	1,045	2,550	594	1,178	155	419	12,313
제 주	66	95	111	102	24	240	85	35	7	30	795
계	8,321 (11.7)	5,874 (8.3)	9,326 (13.1)	12,137 (17.0)	7,106 (10.0)	14,050 (19.7)	3,882 (5.5)	5,885 (8.3)	1,840 (2.6)	2,779 (3.9)	71,200 (100.0)

자료: 국립농산물검사소.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를 형태(업종)별로 살펴 보면 총 위반업소수 39,513개소 중에서 노점상이 11,068개소(2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퍼 7,283개소(18.4%), 양곡상 4,166개소(10.5%), 청과상 3,068개소(7.8%), 식육점 1,613개소(4.1%), 한약상 1,495개소(3.8%)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에 대형 유통업소인 백화점이나 수입업자 그리고 대량의 散物(bulk)상태로 수입되는 농림수산물을 소량포장하여 국내유통시키는 소분업자의 경우는 위반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소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상대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3.3. 원산지표시 이행실태에 관한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3.3.1.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 한국소비자연맹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에서는 1992년부터 매년 전국 주요도시의 대형유통업체(백화점이나 대형수퍼마켓) 및 재래시장(도·소매시장)을 대상으로 수입 농림수산물과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음.

○ 조사내용으로는 조사품목으로 선정된 농림수산물이 조사대상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 판매되고 있을 경우 원산지표시 여부와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그 표시가 농림수산부에서 지정한 '수입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와 함께 표시된 원산지명 및 판매가격 그리고 원산지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판매품이 국내산인지 아니면 수입품인지를 상인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 등임.

○ 1994년도 점포형태별 조사대상 수는 서울을 비롯 전국 35개 도시의 백화점 40개소, 대형수퍼마켓 22개소, 재래시장 165개소 등이

표 3-15 업소형태(업종)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수

단위: 개소

지소별	양곡상	수 퍼	청과상	백화점	식육점	한약상	수 입 업 자	소 분 업 자	노점상	기 타	계
부 산	265	323	135	13	94	289	0	4	441	1,012	2,576
인 천	101	134	64	24	190	67	1	51	162	380	1,174
경 기	784	1,111	631	35	603	322	5	94	662	2,122	6,369
강 원	209	463	141	21	82	44	2	25	1,008	752	2,747
충 북	211	644	145	7	21	26	0	32	766	275	2,127
충 남	460	1,175	285	4	134	195	0	33	1,764	608	4,658
전 북	468	1,046	435	14	40	132	0	16	912	698	3,761
전 남	423	816	339	14	121	71	0	45	1,579	1,314	4,722
경 북	602	639	324	11	229	152	3	11	1,568	1,564	5,103
경 남	630	801	477	19	97	193	2	289	1,990	1,277	5,775
제 주	13	131	92	1	2	4	0	1	216	41	501
계	4,166	7,283	3,068	163	1,613	1,495	13	601	11,068	10,043	39,513
	(10.5)	(18.4)	(7.8)	(0.4)	(4.1)	(3.8)	(0.03)	(1.5)	(28.0)	(25.4)	(100.0)

자료: 국립농산물검사소.

며, 조사결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는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아직도 일부지역 및 일부품목에 있어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점포형태별 수입품판매 정도는 백화점이나 대형수퍼마켓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재래시장에서 수입 농림수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래시장 중에서도 판매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점포보다 노점상의 수입품 판매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 업소의 8.5%이었으며,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재래시장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로 분류된 것은 상인이 국내산인지 수입품인지 모른채 판매하고 있는 경우와 수입품이라는 것이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이 국내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음.

○ 지역별 원산지표시 판매실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35개 도시의 평균 원산지표시 판매율은 62.2%, 지방평균이 62.7%로서 도시보다 지방에서 수입품 원산지표시 의무가 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점포형태별 원산지표시 실태를 비교해 보면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92.1%로서 비교적 표시율이 높게 나타난데 반하여 재래시장의 경우는 59.1%로서 재래시장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재래시장 중에서도 도매시장보다는 소매시장에서, 점포보다는 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품에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았음.

○ 품목별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결과 곡물류의 경우는 80% 이상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양호해진 반면에 수산물류는 20% 이하로서 아직도 원산지표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음. 한편, 견과류의 표시율은 50% 정도이었으며, 임산물류의 경우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의 상인들이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국내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음.

표 3-16 품목별 원산지표시율 조사결과(소비자단체)

품 목 명	표 시 율	품 목 명	표 시 율	품 목 명	표 시 율
참 깨	82.9%	호 두	42.2%	말린고사리	52.6%
수 수	85.9	대 추	19.6	삶은고사리	34.6
녹 두	85.9	잣	49.6	표고버섯	47.6
팥	79.8	곶 감	47.3	통 마 늘	42.1
조	85.2	땅 콩	62.5	무말랭이	15.5

자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3.3.2. 한국소비자보호원

○ 현재 시행중인 원산지표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순천, 천안 등 7개 도시의 백화점 13개소, 연쇄점 25개소, 일반시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별 상위순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국내산·외국산 원산지표시 의무 공통품목 63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실태조사를 1995년 2월~3월 중에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조사 대상지역의 백화점·연쇄점 38개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63개 원산지표시 의무품목의 원산지표시율은 81.7%이었으며, 분야별 원산지 표시율은 농산물 89.3%, 임산물 97.0%, 축산물 83.5%, 수산물 65.2%로서 수산물의 표시율이 가장 낮았음.

○ 품목별 원산지표시 실태를 보면 수삼·천연꿀 100.0%, 녹두 95.8%, 율무 95.5%, 영지버섯 94.7%, 콩 94.6% 등으로 이들 품목의 경우는 비교적 원산지표시가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냉동오징어 40.0%, 냉동조기 50.0%, 고등어 53.6%, 아귀 57.1%, 마른미역 60.0% 등은 상대적으로 표시가 잘 안되고 있었음. 유통업체별로는 백화점 92.3%, 연쇄점 72.2%의 표시율을 나타내었음.

○ 일반(정기·재래)시장 16개소의 경우 원산지표시가 제대로(90% 이상) 지켜지고 있는 곳은 서울의 경동시장과 부산의 부전시장 2개소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시장은 농산물과 임산물의 경우 일부(30% 미만)만 표시되어 있고 수산물의 경우는 거의(10% 미만) 표시가 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음.

○ 특히, 최종 표시의무자인 판매(소매)업자에게 원산지를 알려 주어야 할 도매업소(서울·대전·울산 등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산지표시율은 50% 수준을 밑돌고 있었음. 원산지표시 의무자인 최

종 판매업자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41.8%에 불과하였으며, 원산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는 31개업소 가운데 77.4%는 이러한 상품의 경우 원산지를 임의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었음.

○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한다는 경우는 37.7%에 불과하였고, 소비자들 가운데 32.2%는 표시된 원산지를 불신하고 있었으며 판매업체 중에서도 일반(재래)시장의 원산지표시를 가장 불신(55.6%)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시된 원산지에 대해 소비자가 불신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고사리(57.1%), 참깨(44.4%), 녹용(44.2%), 천연꿀(40.4%), 굴비(34.0%), 녹각(23.8%), 마늘(22.1%)의 순이었음.

○ 한편, 소비자의 98.1%는 원산지표시가 안되어 있거나 허위로 표시된 상품을 관련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소비자들은 표시된 원산지에 대해서는 매우 불신하면서도 신고나 고발을 통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상 소비자단체의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산품에 비해 농림수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함에서 생기는 문제점과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 또한, 유통업자가 양심적으로 수입산임을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구입하기를 꺼려하는 일부 특정상품 자체의 문제로 인해 유통업자가 원산지표시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으며, 복잡한 유통구조로 말미암아 유통업자 자신들도 판매하는 농림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실히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임.

○ 원산지표시제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농림수산물의 특성

즉, 대부분의 농림수산물이 규격화되어 있지 못하고 미포장상태(산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산지표시가 어려우며, 농림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는 유통과정에서 재포장되거나 산물거래시 국산으로 위장·둔갑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원산지의 위장·둔갑시 책임소재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 원산지표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적자원 및 예산이 부족하고 과다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통 업소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표 3-17 원산지표시제의 집단별 문제점

구 분	정책집행자	수혜대상자	유 통 업 자
미포장 거래관행	41.5%	24.8%	23.7%
복잡한 유통구조	31.5	27.1	28.3
업자들의 이윤추구	25.4	18.8	23.8
정부의 행정편의 주의	0.8	17.3	10.5
농민·소비자보호 미흡	0.8	12.0	13.0

자료: 이명화,「원산지표시제도의 집행사례분석」, 1995.

3.4. 원산지표시제 관리운용상의 문제점

3.4.1. 단속인력(기술공무원)의 절대부족

○ 지역(농검지소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볼때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수는 많은데 반하여 이들 업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관리하는 농검의 단속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뿐만 아니라 단속공무원인 농검 원산지계 기술직원의 업무가 단순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농산물 수매검사 및 보관관리를 주로 하는 단순업무 외에도 '93년부터 주요 농산물의 품질인증, 표준규격화 사업 등 농산물의 유통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그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단속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임.

○ 더우기 1996년도부터는 행정수요 변화로 말미암아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사료검사, 인삼검사 등 추가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검사인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3.4.2. 원산지표시 단속공무원 수의 지역간 불균형

○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수에 대한 농검의 단속공무원 수가 지역(농검지소)간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검사인력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업소 수의 차이가 많으며, 이는 원산지표시 관련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예컨대, 부산지소나 경기지소(서울 포함)의 경우 원산지계 기술공무원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업소 수는 830~960개소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전북지소의 경우는 90개소로서 검사원 1인당 관리대상 업소수가 많은 지소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중 미표시업소(1차 주의경고)에 대한 추후 시정여부 조차 제대로 확인할 겨를이 없는 실정임.

3.4.3. 검사공무원에 대한 준사법권 미부여로 강력한 단속 불가능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속공무원이 위반사실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업소에서 이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법조문 해석상의 견해차이(법상에는 '위장·허위 판매한 자'로 되어 있는데, 상인들은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중인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로 위반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현장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3.4.4. 과학적인 단속장비의 미흡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방법은 주로 단속공무원의 육안이나 촉감 또는 오랜 경험에 의해서 식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단속공무원과 판매업소간에 마찰의 소지가 많음.

○ 다만, 검사원의 현장확인이 곤란하거나 업소측에서 위반사실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정밀검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시판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농검시험소에 의뢰하여 '近赤外 分光分析機(NIRS: 근적외선을 이용하는 일종의 성분분석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단속현장에서 식별이 가능한 간편하고 정확한 식별장비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현재 우리 나라에서 농산물의 원산지식별을 위한 정밀검사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NIRS기는 원래 농산물의 원산지를 식별하기 위한 기자재가 아니라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단순히 식품이 보유하고 있는 성분(물리적, 화학적 구성요소)을 분석하는 기계에 불과함.

○ 이로 말미암아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과정에서 위장·허위판매 사례를 정확히 적발하기란 매우 어려운 처지이며, 주로 미표시(주의경고) 또는 규격위반(현지시정) 업소가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

3.4.5.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역추적조사 불가능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유통단계별 역추적 조사는 대부분 소매단계로부터 도매단계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전의 단계까지 역추적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수입 농림수산물을 예로 들면, 국내 소포장업자의 경우 서류상의 주소지와 실제 포장작업 장소가 동일하지 않으며, 산지 5일시장의 경우는 대부분이 소규모로 무자료거래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조사가 곤란함.

○ 수입산 마늘의 경우 수입된 후 국내 마늘 주산지인 서산으로 운반되

어 깐마늘 형태로 단순 가공처리하여 서울 등 대도시 소비지로 반입 유통될 때는 국산마늘(서산마늘)로 둔갑판매되는 사례도 있는바 이 경우 역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입잡곡(수수, 좁쌀, 메밀 등)의 경우도 수입된 후 조곡상태로 국내의 잡곡 주산지인 제천, 안동 등에서 정곡으로 처리되어 국내산 잡곡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3.4.6. 관련기관간의 협조체제 미비

○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에 관한 현장단속은 유통관리 전담기관인 농검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구정 또는 추석전을 기하여 시·군의 행정공무원·검찰 및 경찰관과의 합동단속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농검지소에 따라서는 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합동단속을 연중 5~6회 실시하는 지역도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업무성격이 서로 다른 농검과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3.4.7. 예산부족으로 단속업무 수행의 효율성 저조

○ 원산지표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홍보물 제작비, 현지교통비, 식대 등)은 물론 시료채취 후 정밀검사에 필요한 경비 및 정밀검사 기자재 구입비도 단속기관인 농검의 자체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규정된 단속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에 있어 농검으로서는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수입 농림수산물 판매업소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또는 지도교육이 아직 미흡한 실정임. 유통관리 전담기관인 농검에서도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용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매스컴 등을 통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입 농림수산물 판매업자의 상도덕(신용거래)을 바로 잡는 동시에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으나 예산부족으

로 말미암아 홍보 교육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3.4.8. 단속 대상업소 및 대상지역 선정기준의 결여

○ 원산지표시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검(본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원산지표시 목표관리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지소의 지역실정 및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수입 및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단속하기 위한 대상업소 또는 대상지역 선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핵심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예를 들어 단속지역(도시 또는 지방)이나 단속대상 업소(업종별)를 정해 놓는다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수입 농림수산물의 국내 유통과정상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유통단계(재포장단계 및 소매단계)라든지 위반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노점상, 특산품 주산지를 중점으로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4.9. 판매업자 및 소비자의 인식부족

○ 수입 또는 국내산 농림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업자는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 농림수산물의 산지를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간에 무조건 '국산(그것도 국내 유명산지로 표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 유통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농산물을 구입할 때 산지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미표시 업소에 대해 표시판매를 주지시키는 일은 물론 허위·위장판매 등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를 고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보임.

3.4.10. 소비자의 원산지표시제 참여부진

○ 농림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인 것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농림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기하고자 농림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고발포상금 지급제도'를 199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동 제도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참여도는 극히 부진함.

- 고발포상금 지급제도가 시행된 1995년 3월부터 11월까지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에 관한 고발사항은 10여건이 주무관청에 접수된 바 있으나 모두 관련공무원에 의한 것임. 그 밖에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유통업자들에 의해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드물게 전화상으로 주무관청에 신고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변상의 위험을 이유로 회피하는 실정임.
- 이 처럼 동 제도에 대한 일반 소비자(주로 가정주부)의 참여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소비자가 부정유통 행위를 고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검사공무원도 혼합 또는 위장판매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지식이나 식별능력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도록 한다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소비자의 참여도를 다소나마 높히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식별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원산지 미표시업소에 대한 신고제의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동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상인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신고마저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의 신고율을 높히기 위해서는 무상신고제보다는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신고제가 바람직할 것임. 비근한 예로서 최근에 교통법위반자 신고 포상금지급 제도가 시행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적발시 사진을 첨부하거나 위반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무관청에 우편신고할 경우 적정 보상금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주부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5천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주부가 33.3%이었음.

제 4 장

소비자의 인식도 및 활용도

1. 소비자조사 개요

○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효과성은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구매시 소비생활에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음. 이에 본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원산지표시 활용도가 낮다면 그 이유를 규명하여 원산지규정을 개선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비자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연구에서의 소비자조사는 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학교 선정은 소득 및 연령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하였음. 학부모만을 조사대상으로 할 경우 50대 후반 이상이 제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를 통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음. 조사표본은 총 650명이며 회수율은 64.2%임.

○ 조사대상 소비자의 일반적 상황인 연령, 소득, 학력에 대한 기본 통계치는 다음과 같음.

표 4-1 조사대상자의 기본 통계치

변수(단위)	평 균	표준편차	최 소 치	최 대 치	응답자수(명)
연령(세)	40.2	8.2	21	65	417
월평균소득 (만원)	197	83.7	50	500	399

학력수준	중졸이하	고 졸	대 졸	응답자(명)
	47	185	185	417

2. 원산지표시제 인식도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8%가 원산지표시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중 21.1%만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원산지표시제의 숙지도는 높다고 하기 어려움.

- 소비자들이 원산지표시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로는 T.V와 신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시장에서 상품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보고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원산지표시제의 홍보가 미진함을 보여 주고 있음.
-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의 홍보나 강연을 통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비율은 7.5%에 머물러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미약함을 보여 주고 있음.

○ 신문이나 T.V.를 통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언론매체가 원산지표시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원산지표시제를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응답자의 7.2%는 아직도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음.

표 4-2 원산지표시제 인지경로

경로별	신 문	라디오	T.V.	잡 지	소비자단체	기 타	계
응답자수	133명 (34.4%)	5 (1.3)	173 (44.7)	5 (1.3)	29 (7.5)	42 (10.9)	387 (100.0)

○ 소비자의 학력에 큰 차이없이 원산지표시제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에 있어서 원산지표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원산지표시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중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이며 응답자 중 72.9%의 소비자는 원산지표시제를 대강 이해하고 있음.
- 원산지표시제를 자세히 알고 있다는 소비자들은 부정유통의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항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비자는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임.

표 4-3 원산지표시제 숙지정도

학 력 별	자세히숙지	대강숙지	대체로모름	전혀모름	계
중졸	10	30	5	2	47
고졸	35	134	11	5	185
대졸	38	140	7	-	185
계	83	304	23	7	417
(%)	(19.9)	(72.9)	(5.5)	(1.7)	(100.0)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교육원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는 1994년과 1995년에 12회에 걸쳐서 수입농산물과 관련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중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교육이 8회 실시되었음.

- 각 소비자단체별로 각종 소비자교육이 거의 매일 실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농산물과 관련된 교육회수는 매우 적음.
- 교육대상도 주로 소속단체의 회원과 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폭넓은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4-4 소비자단체의 농산물관련 교육현황, 1994~95

주 관	교 육 대 상	참가인원	교 육 내 용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주 민	150명	수입농산물의 문제점과 소비생활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부	인천지부 모니터요원	28	수입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한국공익문제연구원 당진지부	당진지부 모니터요원	30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구분방법
서울 YWCA	회 원 모니터요원	30	수입농산물 표시요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서울지부	회 원	190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충주지회	충주시민	110	수입농산물과 원산지표시제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훈련원생(조리직업훈련)	65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한국소비자연맹 의정부지부	의정부시민 모니터요원	35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조사
한국소비자연맹	회 원	128	수입농산물 농약사용실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서울지부	회 원	60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원(조리직업훈련)	60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한국소비자교육원 하남지부	회 원	150	수입농축산물의 농약피해에 대한 소비자 제안

자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3. 원산지표시제 활용도

○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주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설문조사에 응답한 소비자 417명 중 48.7%인 203명이 농산물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196명은 경우에 따라서 원산지를 확인, 18명은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주된 사유는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가 76.8%로 절대적으로 많으며, 22.7%는 단순히 구매시 참고로 하기 위해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음. 한편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203명 중 1명에 불과하여 소비자들의 국내산 농산물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우에 따라서 원산지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소비자(196명) 중 상품구입시 원산지가 제시되었으면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율이 39.8%, 구입하려는 상품이 수입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율이 38.3%,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이 사회문제화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율이 14.3%이며 나머지는 구입품목이 비싸고 중요한 경우로 응답함.
- 일부는 제공된 원산지표시의 신뢰성이 없어서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함으로써 원산지표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경우가 77.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원산지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상인에게 물어보거나 자신의 경험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뢰도는 매우 낮음.

- 전반적으로 원산지표시제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원산지표시가 있는 경우에 원산지를 확인한다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율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조사에 응답한 417명 중 68.1%는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중 71.5%가 표시위치의 부적절, 16.5%는 표시활자의 크기가 작아서,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음.
- 표시기준에 따르면 포장전면 좌측상단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불규칙하게 운영되고 있음. 심지어 랩포장 농산물 구입후 뒷면에 원산지 표시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사례도 있음.
-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표시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표 4-5 소비자의 원산지표시 사항 만족도

계	만 족	불 만 족	불만족 사유		
			크 기	위 치	기 타
417명 (100%)	133 (31.9%)	284 (68.1%) 〈100%〉	47 〈16.5%〉	203 〈71.5%〉	34 〈12.0%〉

4. 원산지표시제 평가

○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산물 구입처는 어디이며, 원산지표시제가 잘 지켜지는 장소와 잘 지켜지지 않는 장소는 어디인지를 파악함.

표 4-6 소비자의 농산물 주요 구입처

구입처	백화점	수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노점상	도매시장	농협판매장	계
응답자수(명)	109	130	3	81	38	14	39	414
(%)	(26.3)	(31.4)	(0.7)	(19.6)	(9.2)	(3.4)	(9.4)	(100.0)

○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입처는 수퍼마켓, 백화점, 재래시장, 농협공판점, 노점상 등의 순서로 조사됨.

○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농산물 판매처 중 원산지표시가 잘 되고 있는 곳은 백화점과 농협공판장을 꼽고 있으며 잘 안되고 있는 곳은 재래시장과 노점상을 지적하고 있음.

-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백화점이나 농협판매점 등을 방문하는 것은 단속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래시장이나 노점상을 단속한다면 어느 정도 단속실적은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노점상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 단속위주로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표 4-7 구입처별 원산지표시 이행도의 소비자 견해

구 분	백화점	수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노점상	도매시장	농협판매장	계
잘 되는곳	259명	22	8	4	-	13	91	397
잘 안되는곳	9명	24	16	229	112	7	-	397

○ 소비자들은 제공된 원산지정보의 진실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응답자 417명 중 71.5%인 298명이 원산지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21.1%만이 상품정보를 신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제공되는 상품정보를 반신반의한다는 응답자 중 58%의 소비자는

그래도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농산물을 구입하지만 나머지 42%의 소비자는 속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저렴한 수입농산물을 구입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상품정보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원산지표시를 불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수입산을 구입하는 경향이 높음.

표 4-8 원산지표시 정보의 신뢰성

구 분	믿 음	반신반의	불 신	계
응답자수(명)	88	298	31	417
(%)	(21.1)	(71.5)	(7.4)	(100.0)

○ 원산지가 표시되었으나 신뢰성에 의문시하는 품목은 조, 수수 등의 곡류와 고사리, 취나물 등의 산채류 그리고 육류의 순으로 소비자들은 지적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은 채유종실류, 산채류의 상품정보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부정유통 단속을 할 경우 소비자들이 불신하는 품목에 단속요원을 집중 투입할 경우 단속의 효과는 높을 것으로 여겨짐.

표 4-9 원산지표시사항 불신 품목

불신도	곡류	두류	채유종실류	채소류	산채류	버섯류	과실류	육류	계
제1위	99 (30.2)	30 (9.1)	80 (24.4)	44 (13.4)	28 (8.5)	1 (0.3)	5 (1.5)	41 (12.5)	328명 (100.0)
제2위	12 (3.4)	33 (10.1)	52 (15.9)	54 (16.5)	73 (22.3)	19 (5.8)	60 (18.3)	25 (7.6)	328명 (100.0)
제3위	13 (4.0)	17 (5.2)	35 (10.7)	26 (7.9)	45 (13.7)	17 (5.2)	64 (19.5)	111 (33.8)	328명 (100.0)

5. 새로운 정보와 소비자반응

○ 소비자들이 국내외산간 농산물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과 농산물 유통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간유통단계에서 둔갑 및 혼합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정보에 의해 소비자들은 구매의향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을 영위하면서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점을 크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소비자의 올바른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유통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마늘의 소비행태를 파악한 결과 마늘 구매자의 81.8%는 통마늘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깐마늘을 구입하고 있는데 통마늘을 구입한 동기는 신선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 절대적으로 높으며(65.4%), 가격이 깐마늘 보다 저렴하기 때문(23.3%), 나머지는 과거의 소비습관 때문임.
- "깐마늘은 부정유통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향후 구입형태에 관한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4.5%는 향후 깐마늘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소비자들은 농산물구입시 산물구입과 소포장구입을 병행하고 있으나 전문 수입업자나 농협,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한 수입농산물의 경우 소포장 상태로 수입되거나 산물수입시 소분업자에 의해 소포장되어 유통되나 소매상에 의해서 해포되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산물(散物)로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제공한후 소비자 구매의사 변화를 알아 본 결과 비포장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85.1%로 나타나 제도도입과 홍보로 인해 왜곡된 수요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교육 및 홍보시 부정유통의 가능성이나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가능하면 소비자로 하여금 소포장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 홍보를 통하여 다듬어진 상품(소위 1.5차 가공)의 구입을 자제하도록 유도함.

제 5 장

외국의 원산지표시제

1. 일 본

○ 일본의 수입 농림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품질표시 기준제도: JAS법, 1993 개정)'과 '청과물의 일반품질표시 가이드라인(1991 책정)' 등 관련 법률·규정 또는 정부시달(지침), 도도부현의 조례 및 유통업계의 자주적인 규제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일본의 원산지표시제는 우리 나라와 같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다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은 물론이며 처벌규정도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일본의 식품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들은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표시사항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에서 식품을 구입하고 있음.

○ 일본의 식품표시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JAS마크'가 있는

데, 이 마크는 농림수산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해진 JAS규격 검사에 합격해야만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1995년 3월 현재 JAS규격 품목은 음식료품 및 유지류(329개 품목)와 그외 농림물자(68개 품목) 등 총 397개 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표시사항으로서는 품목명, 원재료명, 내용량(중량), 賞味기간, 보존방법, 제조업자명 및 주소 등임.
- JAS마크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표시적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상품선택시 필요한 상품정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1993년 JAS법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는 JAS규격을 제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도 품질표시 기준을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품질표시 대상품목이 확대되었음.

- 품질표시 기준이 정해진 물자를 제조하는 업자 또는 이를 판매하는 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림수산대신은 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이 기준을 지켜줄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영 T·V 또는 라디오방송, 신문에 공표하는 등 사회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JAS마크를 부착하여 유통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제로 JAS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품질표시제도의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되어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음.

- JAS마크 부착상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산하의 농림수산 소비기술센타(전국 10개소) 및 등록허가기관 등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표시기준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지방농정국이 농림수산 소비기술센타 및 식량사무소의 협력을 받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농림수산성에서는 관련법률에 의한 표시규제 외에 보다 광범위한 식

품에 있어서의 품질표시 적정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식품의 품질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놓고 있음. 예를 들면, 청과물의 일반품질표시 가이드라인, 유기농산물의 특별표시 가이드라인 및 신선식품의 품질표시 가이드라인 등이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이 1991년 야채류의 산지표시이행을 촉구하고자 '청과물의 일반품질표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으나 실제로 산지표시는 브랜드성이 높은 일부 국내산 야채에 국한하여 이행되어 왔음.

- 최근 일본에서도 급증하는 수입농산물 중 일부 수입야채의 경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로부터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 이의 일환으로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유통국장 주관하에 1995년 5월에 개최된 '식품표시문제 간담회(대학교수, 생산자단체, 식품유통업자, 소비자, 수입업자 대표로 구성)'에서 1995년 중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운용지침(수입 야채류의 원산국표시 및 국내산 야채의 산지명시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2. 미 국

○ 미국은 관세법, 미연방거래위원회 규정(FTC 규정)을 통해 시장질서 보호차원에서 원산지표시를 감독하고 있음. 1930년 '관세법 제304조 및 FTC 규정 제5조'에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과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금지조항'에서 불공정한 원산지표시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표시물품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음.

○ 1970년 중반까지는 연방거래위원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불공정한 원산지표시를 한 물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사후규제방식을 주로 취해 왔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원산

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수입시점에서 상품 및 개별포장에 읽기 쉬운 문자로, 가능한 한 눈에 잘 띠는 장소에, 영어로 원산지 국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불명료한 원산지표시는 관세법이나 미연방거래위원회 규정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원산지국명을 표시하였어도 표시된 원산지를 숨기는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정되어 수입·판매가 금지되고 있음.

○ 관세법에서는 원산지표시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때 물품이나 포장용기에 원산지표시가 잘못 되었을 경우 이를 반송 또는 파기시키거나 세관감독하에 재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수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수입물품이 원산지표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상품의 실질적 소유자는 물품견본과 함께 원산지표시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산지를 실제로 표시하지 않았으면서 적절히 표기된 것으로 위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물품의 압류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또한, 고의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1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3. E C

○ EC 역내 국가간의 교역물품에 대하여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EC 전체 차원에서 규제법규는 사실상 없으며, EC 각 회원국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음.

○ 그러나 EC 집행위의 기본적입장은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경우 원산지표시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소요되므로 국산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열위에 처하게 되

며, 이는 결국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고 간주하여 모든 수량제한 조치 및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도입을 금하는 EEC조약 제30조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EC 각 회원국이 국내법을 적용하여 역외수입품에 대해 원산지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은 설령 이 규정이 국산품이나 EC산품 그리고 제3국 생산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일지라도 원칙적으로 EEC조약 제3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EC 집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규정 및 행정규칙의 조화에 관한 이사회규정(1984. 9)」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에 대해 각 회원국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당하거나 혹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 대하여 각 회원국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권리와 이와 관련된 규정 도입 권한을 인정해 주고 있음.

○ 이에 따라 영국과 독일 등 대부분의 EC 회원국들이 국내법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상품을 압류하거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영국은 특정한 여건에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프랑스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스페인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3. 1. 영국

○ 영국은 현재 '거래표시 명령(Trade Descriptions Order, 1988)'에 의해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거래표시법(Trade Descriptions Act, 1968)'에 따라 허위표시 상품의 거래 및 허위 원산지표시 부착상품의 수입을 금지시켜 왔음.

○ 1972년 개정된 거래표시법에서는 일반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

도록 상품의 원산지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품에 있어서는 영국의 명칭, 도안 혹은 이와 유사한 인상을 주는 즉, 영국을 상징하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국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81년 거래표시명령(원산지국 표시, 잡화)에서는 의류 및 직물, 가정용 전기기구, 신발류, 식탁용 나이프류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들 물품에 대해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1985년 EC 집행위가 영국의 1981년 거래표시명령이 EEC 조약 제30조(수입상품과 국산품의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영국은 1988년 '거래표시법 명령(생산지표시)'을 제정하였으며, 동 명령에 의한 원산지표시는 「명확하고 판독가능하며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위치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표시와 근접한 곳에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거래표시법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즉결재판에서 최고 5,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소되어 벌금형(벌금상한 무제한)이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과 신체적 처벌 모두에 처할 수 있음.

3.2. 독일

- 독일은 수입품의 원산지 및 원재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내법은 사실상 없으나 원산지가 표시되어 수입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표시가 부당한 표시이거나 혹은 부당하다는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1981년)의 국내법'에 의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수입품이 국내에 들어온 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음.

3.3. 프랑스

○ 프랑스 역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법률은 특별히 없으나 프랑스 국산품인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표시(예: 에펠탑의 도안, 프랑스지도, 프랑스지명 등 프랑스를 상징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에 의거 원산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부정 위조에 관한 법률(1905)'과 이 법을 개정한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허위표시 금지법(1930)'에서 실제의 원산지와 다른 국가의 상품인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상품의 판매를 금하고 있음.

○ '상표에 관한 법령'에서는 원산지상표에 관한 제반규정을 정해 놓음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을 잘 지키는 자국내 제조업자나 일반소비자는 물론 프랑스 이외 국가의 소비자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상표명에 대한 권리는 특허와 같은 지적소유권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으며, 상표를 사칭하거나 시장질서 교란 및 소비자의 오인유발 행위 등은 처벌대상으로 되어 있음.

○ 1935년 포도주·브랜디, 유제품 및 농산가공 식품에 대해 원산지상표를 감독하고 상표승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원산지표시 협의회(Institut Nationale des Appellations d'Origine: INAO)'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INAO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음.

- 관련법규 제정 및 원산지표시 보호를 위한 국제협정 체결
- 원산지상표 부착승인 및 생산여건 결정
- 원산지상표 부착승인에 관한 자문
- 자국내 생산농가 및 소비자보호 정책수립(원산지표시보호책)
- 외국에서의 프랑스상표 사칭·남용(오인)에 관한 사법조치

○ INAO에는 포도주·브랜디, 유제품 및 농산가공식품 등의 3개 중앙

위원회와 12개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중앙위원회(생산·가공, 행정부 및 소비자대표로 구성): 원산지상표 관련사항을 심의결정
- 지방위원회(행정부대표, 지역전문위원으로 구성): 원산지상표와 관련하여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심의 및 의견제시

○ 1990년 7월 관련법령에 의해 INAO로 하여금 모든 농산물과 농산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상표관리 감독권(AOC)이 부여됨에 따라 INAO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1992년 7월 유럽법령에 원산지상표 보호권(AOP) 및 생산지명 보호권(IGP) 등을 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지명보호 체계가 확립되었음.

제 6 장

원산지표시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1. 농산물 규격출하 확대

○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농산물유통구조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바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규격출하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짐.

- 농산물의 규격출하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있으며 규격출하 물량도 생산량의 일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가능하면 소포장단위로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도록 유도하고 원산지미표시 가능성이 많은 산물거래를 줄이도록 함.

- 산물거래시 팻말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만 단속이 느슨한 경우 팻말을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산물거래의 경우 부정유통 가능성이 높음.
- 규격출하된 상품이 유통과정에서 해포되어 유통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부정유통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소비자의 소포장 상품을 구매하려는 구매행위가 유통구조를 개선

하는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며 그 결과는 소비자이익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가능한 품목, 특히 부정유통이나 원산지미표시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단체가 상품화시키고 유통시키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특히 임산물의 원산지미표시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임협에서의 유통참여가 요구됨.

○ 원산지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품목의 경우 소비지 유통단계의 단속보다는 산지에서 원산지표시제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짐.

- 쌀 등 곡류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이나 도정공장에서 출하할 때 규격출하를 독려하고 원산지표시 확인을 강화하도록 함.
-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강화함으로써 농산물검사소 원산지표시 단속인원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임.

2.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상표화

○ 소비자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주로 국내산 농림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농림수산물에 대한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다각적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규격출하와 함께 수입 농림수산물의 부정유통을 억제시키기 위해 국내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의 확대도 상표화의 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상표화로 인해 수입산과 차별화하는 방안도 필요함. 일부 품목의 경우 상표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입물량이 많고 소비자피해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상표화를 촉진시켜 수입산과 차별화하도록 함.

- 특히 주문자생산(OEM방식)에 의한 수입가공품이나 국내 가공품 중 수입농산물의 원료사용 비중이 높은 것과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상표화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여겨짐.
  · 프랑스의 경우 국내외 프랑스산 포도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징벌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상표화를 추진하면서 상품에 원산지 시·군을 표기하도록 하여 상표화를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원산지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원산지 규정을 완화시켜 농림수산물의 상표화를 촉진함.

3. 원산지표시 방식의 개선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 방식의 개선이 요구됨.

○ 국내외산 농림수산물의 구별방식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개선하도록 함. 예를 들면 국내산의 경우는 녹색바탕, 수입산의 경우는 백색바탕에 원산지를 표시한다면 소비자가 국내외산을 구별하기가 매우 용이해질 것임.
  - 소비자조사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제시된 불만족 사항(표시의 위치, 크기)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단속의 효율화

○ 한정된 농산물검사소의 원산지표시관리 공무원만으로 모든 농산물판매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더구나 1996년도부터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율적 원산지표시 단속방안의 개발은 매우 시급함.

○ 농산물검사소 및 행정기관의 단속결과나 소비자단체의 실태조사결과 등을 정보화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 품목, 시기별로 단속요원을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원산지표시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수퍼마켓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율이 비교적 높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인력을 투입할 경우 단속의 효과는 미미할 것임. 즉, 원산지표시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유통업소와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겨짐.
- 또한 수입 농림수산물 중 주산지로 역류되어 둔갑유통되는 사례가 있는 잣, 마늘, 양파, 참깨, 땅콩 등에 대해서 집중관리가 필요함. 한편, 소비자들이 원산지정보를 불신하고 있는 곡류, 산채류, 육류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함.
- 단속시기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예를 들어 국내수급불안으로 인해 수입양파가 방출된다면 그 시기에 맞추어 양파의 부정유통을 집중단속하도록 하고, 농림수산물의 성수기에 맞추어 집중단속 품목을 결정하도록 함.

○ 단속요원 중 일부는 전문화시켜 원산지 허위표시나 농림수산물 혼합판매 등의 부정유통 단속을 전담하도록 하는 단속요원 활용면에서의 이원화가 필요함.

- 부정유통위주의 전문 단속요원에 대해서 산지식별이 가능한 과학적 검사장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장비부족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음.

○ 원산지표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함.

- 원산지표시제를 잘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면해주는 방법을 도입하여 단속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유통업소가 자발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을 촉진하도록 유인하는 반면 원

산지표시제를 잘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함.

5. 소비자단체와의 협조강화

○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기관간의 협조는 미진한 실정이며, 각 기관이 모두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관련기관의 협조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 현실적인 방법의 하나로 실질적인 원산지표시제의 이해당사자인 소비자나 소비자단체의 원산지표시제의 참여 유도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교육은 원산지표시의 필요성과 같은 피상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부정유통의 사례, 부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가 입을 손실가능성 등을 교육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농림수산물 구매시 소포장 규격상품을 구입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 농산물검사소는 원산지표시제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는 소비자단체에 여러 가지 수입 농림수산물의 부정유통 사례를 포함하는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교육비용도 지원하도록 하며, 소비자단체에서는 교육대상도 회원이나 모니터요원에서 일반 소비자로 확대하도록 함.

- 소비자단체의 교육중 농산물관련 교육은 횟수면에서 매우 취약함.
- 부정유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후 향후 소비의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수요는 크게 변할 것으로 조사된 바 소비자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정된 농산물 검사소직원이 모든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나 소비자가 원

산지 미표시 사항을 특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원산지표시제에 소비자를 직접 참여시키도록 함.

- 유통업소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를 단속하는 사람이 많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주어 원산지표시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소비자조사결과 원산지 미표시를 신고하는 데에 1만원의 보상금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6. 단속 관련규정의 개정·정비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조항의 해석상 애매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판매업자들이 이를 교묘하게 악이용함으로써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즉,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령 제22조(벌칙조항) 중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자는····' 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공무원이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조치를 취할 때 판매업자가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잠시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주장할 경우 단속공무원이 판매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강력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상기 법조문은 '····판매한 자 또는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는····' 으로 개정하여 위반업소가 법조문을 교묘하게 해석하여 처벌을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수입 농림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또는 위장표시하거나 수입 농림수산물을 국내산과 혼합해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부정유통 행위를 고발할 경우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소비자를 동 제도에 참여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산지미표시 경우에 대한 신고시 보상금 지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부정유통의 경우 전문가도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됨.
- 부정유통은 단속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원산지미표시 단속은 주로 소비자가 담당하도록 단속체계를 이원화 하는 것이 현실적임.

○ 전문화된 일정 수의 부정유통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함. 현재 원산지표시 단속공무원의 권한이 미미하기 때문에 부정유통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발현장에서 신속하고도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참 고 문 헌

강성진. 1994. 12. "소비자 지향적 행정조직개편의 방향," 「소비자문제연구」 제14호, 한국소비자보호원.

김남두. 1992. 8. 「미국의 무역장벽」, 선진국의 무역장벽 연구 8, 정책연구 92-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배원. 1994. 6. "정보화사회와 소비자의 알 권리," 「소비자문제연구」 제13호,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석철외. 1987. 12.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87-01, 한국소비자보호원.

_____. 1990. 12. 「표시적정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0-03,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1994. 12. "소비자보호법제의 개선방안," 「법제연구」 제7호, 한국법제연구원.

김연화. 1994. 6. "국제화시대의 소비자 안전의식 재고," 「소비자문제연구」 제13호,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종구. 1992. 12. 「수입상품의 유통구조와 소비자보호」, 연구보고서 92-07, 한국소비자보호원.

문정숙. 1994. 6. "유럽연합(EU)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13호, 한국소비자보호원.

민충기. 1992. 7. 「EC의 무역장벽」, 선진국의 무역장벽 연구 5, 정책연구 92-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성극제. 1992. 7. 「표준 및 검사제도」, 선진국의 무역장벽 연구 4, 정책연구 92-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진수. 1992. 3.「일본의 무역장벽」, 선진국의 무역장벽 연구 1, 정책연구 92-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경현외. 1989. 11.「거래적정화와 소비자보호」, 연구보고서 89-02,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명화. 1994.「원산지표시제도의 집행사례 분석」-수입 농림수산물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성우. 1995. 1.「정부규제의 비용·편익분석기법 개발」, KIPA 연구보고 94-02, 한국행정연구원.

이승훈외. 1990. 10.「수입상품의 유통실태와 구조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한국무역대리점협회.

이재옥. 1994. 12.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입 및 검역제도와 개선방안,"「농업경제연구」제35집 제2호, 한국농업경제학회.

이재옥외. 1994. 11.「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D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종인. 1994. 12. "우리나라 정부규제 현황과 소비자보호,"「소비자문제연구」제14호, 한국소비자보호원.

장수태. 1994. 6. "허위·과장광고와 민사책임,"「소비자문제연구」제13호, 한국소비자보호원.

조병택·이영준. 1992. 3.「일본의 수입품유통과 유통장벽」, 선진국의 무역장벽 연구 3, 정책연구 92-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양부외. 1991. 2.「GATT/UR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망」, UR농산물 협상 자료 3, D5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 1992. 2.「한·중 농림수산분야 협력방안」, 중국농업시리즈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홍렬. 1992. 3.「원산지규정」, 선진국의 무역장벽 연구 2, 정책연구 92-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1993. 5.「남북한 물자교류와 원산지규정」, 정책연구 93-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1994. 1.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94-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기획원. 1987. 「주요국의 소비자보호제도」.

국립농산물검사소. 1995. 9.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수입상황(1992~94)」.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77. 「OECD 제국의 소비자보호정책」, 입법참고 자료 제202호.

농수산물유통공사. 1991. 12. 「수입농산물 유통실태」.

_____. 1994. 4.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실태」, 자료 제120호.

농협중앙회조사부. 1984. 11. 「농산물수입과 관련한 소비자의식 조사결과」, 자료집84-10.

_____. 1993. 12. 「중국산 농산물 수입 및 유통실태」, 조사연구보고 9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_____. 1993. 12. 「UR총점검」 - 최종협정의 분야별 평가 -〈증보판〉, 정책연구 93-25.

_____. 1994. 7. 「WTO출범과 신교역질서」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 정책연구 94-05.

대한무역진흥공사. 1985. 6. 「'85년도 일본의 대개도국 특혜관세제도(GSP) 해설」, 무공자료 24-15.

_____. 1985. 7. 「85/86년도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무공자료 24-16.

_____. 1985. 9. 「알기쉬운 일반특혜관세제도 -문답식GSP해설-」, 무공자료 24-22.

_____. 1990. 「UR 비관세협상과 선진국의 수입규제」, 무공자료 90-84.

_____. 1993. 6.「아세안 각국의 수입통관절차 및 개요」, 무공자료 93-37.

_____. 1993. 6. 「중남미 각국의 수입관리제도」, 무공자료 93-38.

_____. 1993. 9. 「주요 교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 무공자료 93-46.
대한상공회의소. 1985. 11. 「공정거래제도 정착화방안」.
_____. 「수입정책의 현황과 과제」.
_____. 1983. 「수입마케팅 실태조사 보고서」.
_____. 1986. 「소비자의 외제상품 구매행동 조사보고서」.
_____. 1994. 1. 「국제화시대의 수입관리제도 발전방향」.
_____.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수협중앙회. 1994. 1. 「수입 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 해설집」.
한국개발연구원. 1991.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효율화 방안」, 한국개발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무역협회. 1992. 1. 「제3차 개정판 수출입업무요람」.
_____. 1994. 「주요 선진국의 수입규제 총람」.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소비자정보제공의 효율화방안 연구」.
_____. 1994. 6. 「수입상품 소비실태 및 의식조사」, 조사보고 94-5.
_____. 1994.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비자정보 활용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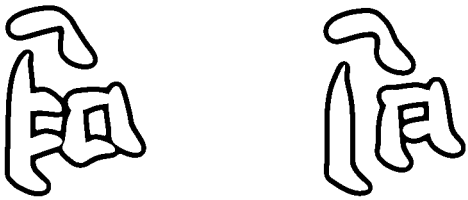

정책연구보고 P13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연구

찍은날 1995. 12. 펴낸날 1995. 12.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5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